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4549-01

농식품 분야 인증규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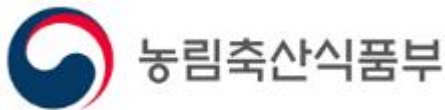
2024. 0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분야 인증규제 개선방안

연구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김 윤 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 김 태 영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문 동 현 (경상국립대학교 조교수)
 허 정 회 (경상국립대학교 조교수)
연구 보조원 : 이 경 옥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장 상 규 (경상국립대학교 석사과정)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본 보고서를 『농식품 분야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2.

연구 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김 윤 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 김 태 영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
문 동 현 (경상국립대학교 조교수)
허 정 회 (경상국립대학교 조교수)
연구 보조원 : 이 경 옥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장 상 규 (경상국립대학교 석사과정)

<연구 결과 요약>

■ 연구 배경

- 정부는 「인증규제 개선방안」(2022. 12. 16.)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인증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소관 23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간: 2023. 10. 19. ~ 2024. 02. 29.

■ 연구방법:

-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 등의 검토
- 문헌 조사 및 온라인 검색
 - 인증 관련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관련 기사 등의 검색
 - 외국 사례는 문헌조사 및 온라인 조사 위주로 진행
- 협회·관계자 의견 청취 및 현장의견 종합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 연구 결과

- 총 23개 법령중 3건 폐지, 6건 개선, 14건 유지 의견임

■ 인증 규제 개선사항(요약)

	인증규제명	목적	관련 법령	제시 의견	세부내용
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개설·운영등을 통해 도농간 교류 활성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지	·중앙행정기관이 법적 인증제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적절함
2	우수종축업체 인증	종축업체의 전문화 및 청정화 유도, 우량 종축 확보 및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 양축 농가에게 종축업체에 대한 선택지표 제공, 종축업체의 번식용 가축 및 씨알의 유통 정보 모니터링	「축산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폐지	·인증신청과 실적이 저조하며 가축검정 제도 및 정액품질 확인으로 대체 가능
3	전통식품 품질 인증	생산자에게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전통식품을 공급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9조	개선	·HACCP 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해주거나 심사항목을 축소 ·정기검사 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술 품질인증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와인이나 맥주 등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9조	유지	·단, 자연재해 및 풍작 등 특수한 상황에서 지역특산주의 '지역'요건 완화 고려 필요
5	가축의 검정	축종별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 선발 및 개량 촉진	「축산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유지	·가축 개량 및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됨.
6	토종가축의 인정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고, 토종가축의 유지·보전과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유지	·다만, 토종돼지와 토종말의 경우 품목 제외 검토 필요
7	인삼류 검사	인삼류 품질관리 및 안전성 제고 등 인삼 생산 농가 및 업체 경쟁력 강화	「인삼산업법」 제7조	유지	·다만,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과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8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점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활한 거래 및 수출입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제98조	유지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속이 필요
9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GAP 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 제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유지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10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유지	·HACCP 원리에 기초한 합리적인 농산물안전관리제도로 활성화를 위해 인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실화를 유지 필요
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을 인증	「동물보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개선	·다단계구조물을 고려한 면적 기준을 제시 필요 ·다만, 산업동물로써의 가축을 다루는 축산부문과의 협의 후 설정 필요
12/1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 친환경 농축산물 장려 등 공익에 기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개선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하위 고시에도 맞게 개정 필요 ·우수농가에게는 검사 유예 또는 선별 검사, 고위험군 위주 검사하는 방식 도입 필요

1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농식품분야 신기술 발굴 및 우수성 인증을 통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유지	·농림식품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를 촉진되기 위해 존속 필요
1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8조	유지	·해당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하여 유지하길 권장 ·다만, 제도 도입 5년여가 지난 육성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존폐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
16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장(제32조~제55조)	유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에서의 명칭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존속 필요
17	농업기계 검정	농기계 성능, 안전성 확보를 통한 농기계화 촉진 및 안전한 농기계 이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1항	유지	·역사가 오래 되고 관련 규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짐. 또한 매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18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유지	·수시로 업계 및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왔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 권함 ·다만,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신기계나 신기술 등에 적절한 기준이나 규격 및 검증절차 등을 제때 설정하는 것이 필요
19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발전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의2, 시행령 제31조~제32조의2	유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속을 권함

20	무병화 인증	사과, 배 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하여 농업인의 우수한 종자 사용 확대	「종자산업법」 제32조의2	유지	·현재는 무병화인증 도입을 위해 관련 기준이나 제도 등을 정비하는 단계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1	차품질 인증	차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폐지	·친환경적 요소(유기농, 무농약)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 폐지를 권함.
2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농촌지역 유무형자원(1차), 가공(2차), 서비스업(3차)를 융복합한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4조	개선	·신청서상의 심사기준 항목의 일부(창의성, 경쟁력)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서류 작성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성격상 '인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증' 대신 '지정'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함.
23	식품명인	우수 식품 기능인 지정으로 우수한 우리 식품 계승 발전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4조의3	개선	·'대한민국명장'이 1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0년 연속 종사 기준을 1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인증규제 개선 사항	9
1. 도농교류교육과정 인증	9
2. 우수종축업체 인증	11
3. 전통식품 품질인증	12
4. 술 품질인증	22
5. 가축의 검정	37
6. 토종가축 인증	53
7. 인삼류 검사	68
8.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75
9.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84
10. 농산물 수관리 인증(GAP)	94
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105
12/1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포함)	112
1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127
15.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142
16.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154
17. 농업기계 검정	169
18.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178
19.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	188
20. 무병화 인증	199

21. 차품질 인증	214
22.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인증	222
23. 식품명인	234
제3장 결론 및 제언	246
참고문헌	253

표 차 례

제1장 서론	1
<표 1> 인증제도 근거 법령 및 담당부서	1
<표 2> 농식품인증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	2
제2장 인증규제 개선 사항	9
<표 3-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	16
<표 3-2>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 사항	16
<표 3-3> 전통식품 품질인증	17
<표 3-4>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제개선 사항	21
<표 4-1> 술 품질인증 대상 주류	23
<표 4-2> 술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29
<표 4-3>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 예시(2023년도)	29
<표 4-4> 프랑스 와인의 등급 구분	33
<표 4-5> 일본 청주의 분류	35
<표 5-1> 축종별 종축검정기관	38
<표 6-1> 연도별 토종가축 인정신청 처리 현황	54
<표 6-2> 축종별 토종가축 인정기관	58
<표 6-3> 토종가축별 품종 인정기준	59
<표 7-1> 인삼류 검사 수수료	71
<표 7-2> 인삼류 검사 규제개선 사항	74
<표 14-1>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현황	128
<표 14-2> 농림축산식품신기술 인증 기술 분야	137
<표 14-3> 농림식품신기술 심사기준	139
<표 14-4> 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 평가 비용	140

<표 15-1>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기준	145
<표 15-2>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 과제별 세부추진 일정	149
<표 19-1> 원산지 인증 표시 방법	189
<표 19-2> 원산지 인증 심사 구비서류	196
<표 20-1> 연도별 과수산업 선진화 대책	200
<표 20-2> 종자산업법 하위규정 제정안	206
<표 20-3> 포장검사 및 특정병(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검정기준	208
<표 20-4> 과수별 묘목 길이 및 직경 기준	209
<표 20-5> 무병화인증 심사 비용	210
<표 21-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 기준	217
<표 21-2>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사항	217
<표 21-3>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218
<표 22-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	227
<표 22-2>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갱신 심사기준	228
<표 22-3> 농촌융복합산업 심사 가점 기준	229
<표 22-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규제개선사항	233
<표 23-1> 식품명인 규제개선사항	245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그림 1> 인증규제 개선방안 연구 흐름도	6
제2장 인증규제 개선 사항	9
<그림 3-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15
<그림 4-1> 술 품질인증 표시유형	23
<그림 4-2> 술 품질인증 신청절차	28
<그림 4-3> 우리나라 전통주 등급과 프랑스의 와인 등급	32
<그림 5-1> 가축의 검정 절차	38
<그림 6-1> 토종가축 인증표시	53
<그림 7-1> 인삼류 검사 절차	71
<그림 8-1>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절차	76
<그림 9-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87
<그림 10-1> GAP인증 마크	95
<그림 10-2> GAP인증 절차	96
<그림 11-1> 동물복지축산농가 인증절차	106
<그림 1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	108
<그림 12-1> 친환경농축산물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인증절차	113
<그림 12-2>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 마크	123
<그림 14-1> 농림식품신기술인증 심사절차	138
<그림 15-1>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144
<그림 15-2>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절차	145
<그림 15-3> 로컬푸드 직매장(예시)	153
<그림 16-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155

<그림 18-1> 신기술 인증 마크	179
<그림 19-1> 원산지 인증 표시방법	189
<그림 19-1> 원산지 인증절차	195
<그림 20-1> 무병화 인증의 표시방법	200
<그림 20-2> 무병화 인증 절차	207
<그림 21-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216
<그림 22-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절차 및 기준	226
<그림 23-1> 식품명인 지정 절차	23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인증규제 개선방안」(2022. 12. 16.)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더욱이 올해 들어 정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인증규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착수함.
 - 이러한 정부의 인증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소관 23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23개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23개 인증에는 가축의 검정, 농업기계 검정과 같이 기본적인 검정도 있고, 전통식품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등과 같이 농산물이나 식품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인증도 있음.
 - 차별화를 위한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증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농업부문 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한 적이 있음.

- 당시 규제완화 내용 중 인증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전통식품 인증 조건 개선,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의 인증절차 개선 등이 있었음.
 - 전통식품 인증: 공장심사 생략 및 문서보존기간의 단축(5년-> 3년)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인증 구비서류 제출 의무 완화
- 23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 특성에 따라 인증실적, 인증에 대한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현장의 의견 수렴, 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증제도의 필요성, 인증 요건, 인증 절차 등의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현황 파악 및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정비 방안 제시
- 인증제도 현황, 관련 법령·제도·지침 등에 대한 검토

표 1. 인증제도 근거 법령 및 담당부서

순번	인증	관련 법령		담당부서
1	도농교류 교육과정인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19조	농촌경제과
2	우수중축업체 인증	축산법	제21조 제2항	축산정책과
		축산법 시행규칙 우수 중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26조	
3	전통식품품질 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그린바이오산업팀

4	술 품질인증 제도	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외식산업과
5	가축의 검정	축산법	제7조	축산정책과
6	토종가축의 인정	축산법 시행규칙 토종가축의 인정절차 등	제2조	축산정책과
7	인삼류 검사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9조,제29조	원예산업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3조~26조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8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3조, 제98조	농축산위생품질팀
9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제13조 2	농축산위생품질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23조제2항,7항 ~8항, 제24조~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10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관원 고시	농축산위생품질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 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농식품부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관원 고시		
11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복지정책과
12	유기가공식품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		
1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친환경농업과
14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인증 요령	제12조의2, 제12조의3~4 제15조의3~5 제6조, 같은 조 2~5	과학기술정책과
1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	식생활소비정책과
16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축산위생품질팀
17	농업기계 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농업기계 검정기준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첨단기자재종자과
18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조 제2조	

19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3	푸드테크정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32조, 32조의2, 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24조	
20	차품질인증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원예산업과
21	무병화인증	종자산업법	제32조의2	첨단기자재종자과
2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촌경제과
23	식품명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그린바이오산업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 규제개선 방안 발굴 또는 기존 규제에 대한 대안 제시

- 인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 규정 및 지침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규제 사항 발굴
- 현장에서 발굴된 내용과 관련 규정 검토 내용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규제의 불합리 여부를 판단
- 담당부서와의 협의 후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안 혹은 대안 제시
-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규제라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방안 제시
- 인증 관련 규제 중 타부처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의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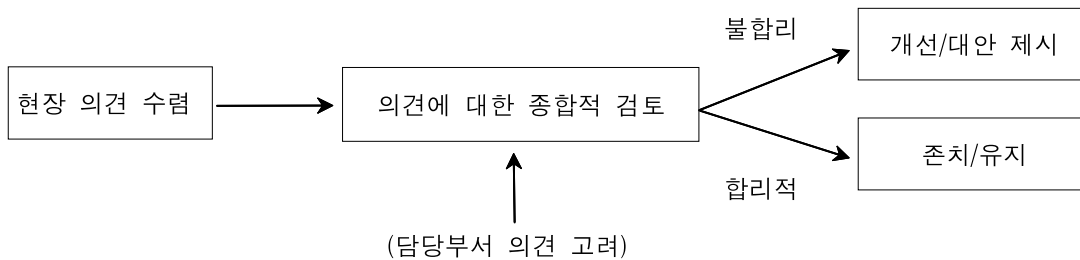


그림 1. 인증규제 개선방안 연구 흐름도

○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분야 인증제도 유사 사례를 조사 후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 우리나라에서만 운용 중인 인증 외에, 외국에서도 운용 중인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제도 운용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함.
- 다만, 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내용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광범위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인증 관련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여 비교 분석함.

예)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많아 단기간에 이를 모두 검토하기는 쉽지 않으며, 제도 자체가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입되어 제도 자체를 검토하기보다는 인증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민간유통업체간의 자율적인 납품기준으로써의 GAP vs. 국가인증으로써의 GAP)

- 외국 사례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세부적인 인증 규정이나 지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 취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농식품 인증제도 대표 분야 현장 의견 수렴

- 인증별 인증받은 농업인, 농가, 법인,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협의회 및 연합회 등 포함)를 대상으로 대면, 유선 등의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 청취
- 협회 등이 없는 인증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표성을 갖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추천받아 면담 방식으로 의견 청취
- 인증규제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
- 청취한 의견을 해당 조항이나 지침 등과 연계하여 정리

표 2. 농식품인증 관련 주요 협회 및 단체

순번	인증	단체	비고
1	도농교류교육과정인증	한국도농문화교류협회	이외 인증 단체 대거 존재
2	우수종축업체인증	한국종축개량협회	
3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전통식품협회	
4	술 품질인증제도	한국주류안전협회	
5	가축의 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6	토종가축의 인정	한국종축개량협회	
7	인삼류 검사	한국인삼협회	
8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한국도농문화교류협회	
9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10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협회	
11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친환경축산협회	
12	유기가공식품인증	한국유기농업협회 전북유기가공식품협회	

13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4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1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소상공인 / 벤처기업의 연합회 또는 협회 형식
16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한국지리적표시특산물연합회	
17	농업기계 검정		
18	신기술농업기계지정		
19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올바른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실천협회	
20	차품질인증		
21	무병화인증		
2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23	식품명인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	

나. 연구방법

-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 등의 검토
- 기존 규제 개선 혹은 완화 내용 조사 및 검토
- 문헌 조사 및 온라인 검색
 - 인증 관련 국회에서의 대정부질문, 관련 기사 등의 검색
 - 외국 사례는 문헌조사 및 온라인 조사 위주로 진행
- 협회 및 관련 당사자 대면, 유선 등의 방식으로 의견 청취
- 담당 부서 협의: 현장 의견 종합하여 담당부서 의견 반영

제 2 장

인증별 규제 개선 사항

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가 대상.
 - *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 2022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 결과, **폐지**
 - 동 제도는 임의제도로써 인증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심사 및 인증제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함.
 - 해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과정인증제도에서 표준화된 인증기준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교육의 창의성 저해 우려가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음.
 - 농어촌과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급은 필요하나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은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동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법정 인증제도로 운영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는 폐지가

적절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 수순
 - 관계기관 의견 수렴 진행('23.2분기)
 - 도농교류법 개정안 마련 및 정부 입법계획 반영('23.하반기)
 - 인증제도 폐지 관련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 기관 의견수렴
 - 농어촌과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급은 필요하나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은 필요성이 낮음.
 - 동 제도를 중앙행정기관이 개입하여 법정 인증제도로 운영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는 폐지

2. 우수종축업체 인증

- 우수종축업체 인증은 「축산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종축업체의 전문화 및 청정화 유도, 우량 종축 확보 및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 양축농가에게 종축업체에 대한 선택지표 제공, 종축업체의 번식용 가축 및 씨알의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2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 결과, **폐지**
 -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규 인증 취득은 종돈장 1.6개, 종계장 0개, 정액등처리업체 1.6개에 그침.
 - 품목별 인증 비율은 종돈장 12%(20/161개소), 종계장 1%(5/513개소), 정액등처리업체 40%(26/65개소) 수준으로, 특히 종돈, 종계장 참여율 저조함.
 - 우수종축업체를 인증하는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인증신청과 인증실적이 저조하고, 추가 인증 취득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인증제도 폐지 권고
 - 동 제도 활용의 최종 목표인 우수 종축의 품질 관리 및 개량은 가축검정 제도 및 정액품질확인* 등을 활용하여 보완 가능.
 - * 종축의 개체별 처리 정액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에서 검사
- 우수종축업체인증제도 폐지 수순
 - 「축산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 삭제, 관련 축산과학원 고시·훈령** 폐지(법령 개정 시 추진)
 - * 축산법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별표3·3의2(인증기준), 별지 14호·15호(서식)
 - **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및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폐지하되 돼지 관련 우수종축업체(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의 경우 정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지표가 필요하여 사업지침을 개선(법령 등 개정 시)

3. 전통식품 품질인증

3.1. 개요 및 관련 법령

- 전통식품품질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임.
 -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199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도 도입 역사가 긴 만큼 그동안 인증대상품목이 확대되고 규제 등도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음.
 - 한국식품연구원이 인증을 진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2024년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품목은 T001(한과류)부터 T106(오미자 가공품)까지 10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우수식품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외에 ‘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제도’ 및 ‘원산지 인증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인증 관련 주요 변경사항

- (i) 인증기관: 한국식품개발원이 인증을 맡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
- (ii) 실적기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기간이 과거에는 ‘최근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최근 1년’으로 강화됨.
- (iii) 과거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 현재는 제외됨.
- (iv) 과거에는 공장 소재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도를 거쳐 인증기관에 접수했으나 현재는 바로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간소화됨.
 - (과거) 신청자 → 시·군(공장소재지) → 시·도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신청서 접수검토, 심사 결과보고) → 농림부(인증서교부 및 공고)
 - (현재) 신청자 → 인증기관(신청서 접수검토, 심사, 심의, 인증서 발급)
- (v) 정기검사 기간: 당초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품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심의회를 거쳐 그 표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 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절차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85호)

제1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인증 절차 및 기준

- 식품제조업체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서류 검토, 공장 심사, 제품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함.



그림 3-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 전통식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함.
 - 공장심사는 공장입지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제품검사는 별도의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심사항목이 HACCP의 시설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항목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2013. 12)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i)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심사 시에 4개 항목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표 3-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

	심사방법	판정기준
공장 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 평점이 70점 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
제품 심사	공장 심사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또는 시험·검사 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표 3-2.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 사항

심사 항목	주요 평가 요건
1. 공장 입지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등
2. 작업장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도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등
3. 제조설비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4. 원료 조달 · 관리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5. 주요공정 관리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등
6. 용수관리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의 적정여부 등
7. 개인위생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8. 환경위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9. 유통체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10. 포장 및 표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 인증심사 관련 수수료는 기본수수료를 포함한 6가지 수수료가 있음.

표 3-3.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수수료 항목	금액 기준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마. 시료운반·조작비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3.3. 사후 관리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 과태료 부과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 라.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 마.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음.

3.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제기능 못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01) 주요 내용

-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인증에 따른 실익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해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함.
- 학교급식 납품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이 되는 안 되는 곳도 있어 전통식품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음.
- 인증제가 30년 가까이 시행돼 왔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증제의 인지도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 전통식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흥법이 만들어져 전통식품인증제뿐만 아니라 전통식품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3.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전통식품 인증과 관련해 다음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첫째, HACCP 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해주거나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방안

(제안 이유) 인증 심사 중 공장심사의 경우, HACCP의 시설기준과 유사성이 높거나 겹치는 부분이 다수 있음.

※ HACCP 인증 시설에 대한 공장심사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HACCP 업체는 공장심사 4항목(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 적합 업체의 경우에도 정기검사(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둘째, 정기검사 기한 연장

(제안 이유) 전통식품 인증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이 많은 상황에서 정기검사 기간을 늘려주어 업체들의 수수료와 검사 기간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

표 3-4.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제개선사항

	현행	제안
1. 공장 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단, HACCP 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거나 항목을 축소할 수 있다.
2. 정기 검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술 품질인증

4.1. 개요 및 관련 법령

-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와인이나 맥주 등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임.
 - 2009년 10월 국세청이 「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 2009-16호, 2009. 5. 25.)를 시행하면서 2개 주종의 과실주 약주를 대상으로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것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음.
 - 2009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술품질인증제로의 전환이 시작됨.
 - 이후 기획재정부(국세청)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의를 거쳐 국세청에서 시행 중이었던 주류품질평화 및 주류품질인증제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
 - 2010년 2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술 품질인증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
 - 2011년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시행함.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대상을 전통주에서 탁주·약주·(전통)소주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고품질 제품생산 뿐 아니라 유통·소비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기 시작함.

- 술 품질인증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9조 및 하위법령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6개의 관련 고시도 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술 품질인증 기준」(농관원 고시, 제2021-11호, 2021. 12. 20.)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농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2016. 12. 1)
 - 「술 품질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013-67호, 2013. 5. 16.)

-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2018-20호, 2018. 5. 30.)
 -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16-18호, 2016. 5. 30.)
 -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농관원 고시, 제2019-10호, 2019. 11. 20.)
- 현재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을 포함한 8개 주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발효주 중에서는 맥주가 제외되어 있으며, 증류주 중에서는 위스키와 블랜디가 제외되어 있음.

표 4-1. 술 품질인증 대상 주류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
품질인증 대상 주류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소주(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미포함 주류	맥주	위스키, 브랜디	기타 주류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술품질인증 표시는 ‘가’형과 ‘나’형 두 가지가 있음.
-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녹색을 사용함.
 -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색을 사용함.



그림 4-1 술 품질인증 표시 유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표시방법·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 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다.

-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서 원본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은 해당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지정 절차 및 기준

- 신청 자격: 「주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업체
- 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음.
 - 신청절차: 생산업체 인증신청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사보고서(시험성적) → 인증위원회심의 → 판정 → 인증서 교부



그림 4-2 술 품질인증 신청 절차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비의 일정 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3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4,600만원을 지원해 ‘가’형 인증에 총수수료의 50%, ‘나’형 인증에 총수수료의 70%를 지원하였음.
 - 그러나, 2024년은 예산 미확보로 수수료 지원 사업이 중단됨.

표 4-2. 술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구 분	기 준
1. 경상비	인증업무에 드는 인건비, 경상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다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른 여비를 적용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걸리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
3. 제품시험 검사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시험기관에서 정한 해당 시험·분석 및 감정료를 적용. 다만, 현장에서 직접 제품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4. 시료 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제 비용

자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표 4-3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 예시 (2023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인증 유형	수수료	국고 지원	자부담
신규 심사 및 연장 심사	‘가’형 인증 (정부지원 50%)	1,600	800	800
	‘나’형 인증 (정부지원 70%)	1,600	1,120	480

자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4.3. 사후 관리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연장 신청을 할 경우 품질 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비치·보존하도록 함.
- 술과 관련된 인증제도라는 점에서 인증 자격, 신청 및 검사, 사후관리 및 위반 시의 처벌 규정 등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관리되고 있음.
- 다만, 품질인증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업체들의 판단에 따라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술 품질인증은 규제 개선보다는 홍보 등의 강화를 통한 판매 증진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4.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술 품질인증제 시험대…10개 중 3개, 4년 연속 재인증 자진 포기”(이뉴스투데이, 2020. 10. 06)
 - 술 품질인증 대상 3건 중 1건꼴로 재인증을 자진해 포기하는 등 전통주 업체들에게 외면받고 있음.
 - 2019년 재인증 대상 제품 63건 가운데 재인증 제품은 45건, 재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18건이었으며, 재인증되지 않은 18건은 모두 전통주 업체가 재인증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재인증 포기율은 2017년 36.4%, 2018년 30%, 2019년 28.6% 등임.
 - 술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3년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실익이 없음. 2018년 기준 전체 주류매출 9조 393억 7,900만원 중 전통주 매출은 455억 7,300만원으로 0.504%에 불과함.
 - 인증에 필요한 정기심사 수수료는 평균 150~160만 원임.
 - 현장조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는 농관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두 달여 남짓 소요되는 과정과 비용에 비해 인증 이후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

- (언론보도) “[사설] 지역특산주, 전통주에서 분리해 별도 육성하자”(농민신문, 2023. 06. 28)
 - 전국 각지에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술을 빚는 소규모 양조장들이 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지만, 지역특산주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주도 살리고 지역특산주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게 대안일 수 있음.

4.5. 외국 사례

[프랑스]

- 우리나라의 술 품질인증제는 프랑스의 와인 품질등급 제도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2009년에 도입한 제도로, 와인과 동일한 4단계 등급제를 고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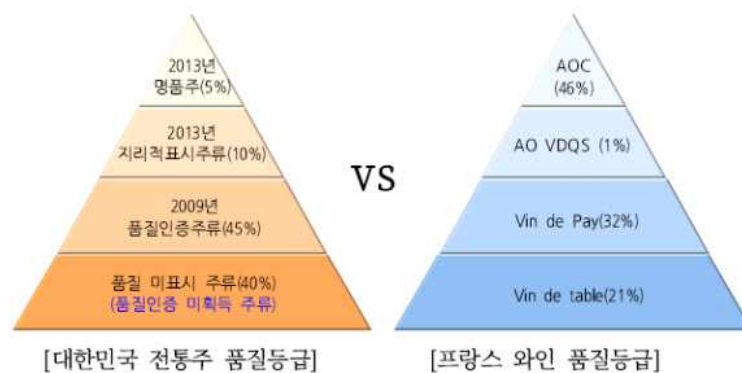


그림 4-3 우리나라 전통주 등급과 프랑스의 와인 등급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09).

- 프랑스는 와인과 증류주의 품질 관리와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1935년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를 시행함.
 - 프랑스 와인의 품질인증을 겸한 원산지명칭 보호제도로, 프랑스 와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고급 이미지 형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도임.
 - 1935년 원산지통제명칭(AOC) 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고, 와인 및 증류주 국가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 도입되었음.
 - 1947년에는 AOC 상품의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는 국립원산지표시품질관리원 (INAO, Institut Nationale des Appellations d'Origine)이 설치되었고, 1955년에는 치즈, 1990년에는 기타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되었음.
- EU가 권장하는 AOP제도 도입 전 프랑스의 AOC는 다음과 같이 운영됨.
 - AOC: 4단계 분류 중 가장 많은 규제가 따르는 단계로 와인을 AOC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함.

- 생산지역 (기후, 토양 등이 연계된 생산지)
 - 품종 규정 (생산지의 기후, 토양에 적합한 포도 품종)
 - 최대 수확량 (포도의 수확량은 곧 와인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
 - 최저 알코올 함량 (일정량 이상의 원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재배법, 가지치기 방법 (포도나무의 관리를 통한 질 좋은 포도 생산 등)
 - 양조법 및 숙성방법 (전통적 양조의 방법 등)
 - 분석시음검사 (관능적 평가를 통한 품질 인정 이상이 되어야 함)
- AO VDQS: 1949년에 AOC 아래 단계로 신설되었으며, 품질 수준은 AOC 와인에 근접하였지만 전체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음.
- 2012년에 AOP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1년 말 폐지되었고, 품질 수준에 따라 AOC와 VIN de PAYS 단계로 흡수됨.
- VIN de PAYS: 지역 등급와인으로 현재는 IGP 등급으로 특정 지방에서 재배된 한 가지 포도 품종만 사용한 와인이 이 분류에 해당되며 전체의 28% 정도로 레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VIN de PAYS의 표기와 특정 산지명
 - 병입업자의 명칭, 본사 주소
 - 알코올 도수와 용량
- VIN de TABLE: 테이블 와인으로 수입포도와 과즙 등을 이용해 와인을 제조할 경우 반드시 레이블에 관련 내용을 표시를 해야 함. 또한, 프랑스에서만 생산된 포도를 이용할 경우 VIN de TABLE de FRANCE를 표기해야 함.

○ 1992년 EU가 AOP(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원산지명칭보호)를 도입하면서 프랑스의 AOC도 이 제도로 통합되고 있음.

표 4-4 프랑스 와인의 등급 구분

AOC(구 와인 분류제도)	AOP(신 와인 분류제도)
AOC	AOP (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Vin de Pays	IGP (Indication Géographique Protégée)
Vin de Table	SIG (L'etiquetage des Vins Sans Indication Géographique)

자료: 류인수(2016), p. 51.

[일본]

- 일본은 청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산지호칭일본주(Sake's Origin Control)와 전통 원산지호칭일본주(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산지호칭 일본주(Sake's Origin Control)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정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현재 술을 제조하고 있는 지역명을 사용할 것
 - 반드시 국내산 쌀을 사용해 술을 제조할 것
 - 인정지역 물을 사용할 것
 - 당류, 산미료, 양조알코올을 첨가하지 말 것
 - 인정지역 내에서 술을 제조하고 저장을 거쳐 상품화 한 술일 것
 - 전통원산지호칭일본주(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는 '전통'이라는 용어가 추가되면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SOC명칭과 다르게 인지되고 있는 역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
 - 인정지역 주변 내 산지의 쌀과 물을 사용할 것
 - 인정지역 내 양조, 저장을 거쳐 상품화 할 것
 - 당류, 산미료, 양조알코올 첨가가 없을 것
 - 효소제에 의한 당화를 하고 있지 않을 것
 - 액화(液化) 빚음을 하지 말 것

- 일본은 그 외에도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청주 제조에 사용한 원료용 쌀의 종류, 쌀의 가공방법, 특정한 지역의 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청주를 구분하도록 하는 '특정명칭주'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특정명칭주는 '청주 중에서 원료나 제조방법이 특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긴쥬슈, 준마이슈, 혼쥬조슈의 세 가지로 구분함.
 - 또한, 「청주의 제조법품질표시기준」(1989년 11월 22일 국세청고시 제8호]에 따라 쌀 재료, 제조방법 등을 기준으로 청주를 8종으로 구분·표시하여 유통함.

표 4-5 일본 청주의 분류

구분	특정명칭주		보통주
사용원료 정미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쌀누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쌀누룩 •양조알코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쌀누룩 •양조알코올 •그 외의 원재료
규제 없음	준마이슈 (純米酒)		후즈슈(보통주)
70% 이하		혼조조슈 (本醸造酒)	
60% 이하	준마이긴조슈 (純米吟醸酒)	긴조슈 (吟醸酒)	
	도꾸베쓰준마이슈 (特別純米酒)	도꾸베쓰혼조조슈 (特別本醸造酒)	
50% 이하	준마이다이긴조슈 (純米大吟醸酒)		

자료: 류인수(2016), p. 62.

4.6.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같이 우리 전통술의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가’형 인증과 ‘나’형 인증 두 가지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을 포함한 8개 주종에 대해 인증제도 적용되고 있음.

- 술 품질인증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양하게 개선되었음. 이에 제도 존속을 권장함.
 - 다만, 현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증을 받은 이후 매출 증가 등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실익이 없어 재인증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증가하는 상황임.
 -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전략을 수립해 인증업체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업계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소규모 양조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세 감면혜택(먼저 출고되는 물량에 대한 감세 혜택)은 통상문제와 연계되어 WTO 분쟁 제소 시 다른 혜택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둘째, 지역특산주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역’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의 취지상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지역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풍작으로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 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셋째, 전통주에서 지역특산주를 분리하는 방안은 수입쌀로 제조된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국제 분쟁의 소지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5. 가축의 검정

5.1. 개요 및 관련 법령

- 가축의 검정은 196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축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가축검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음.
- <가축의 검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체중, 근내지방도 등 경제형질 측정을 통해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
 -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
 - FTA 등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 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2. 인증 절차 및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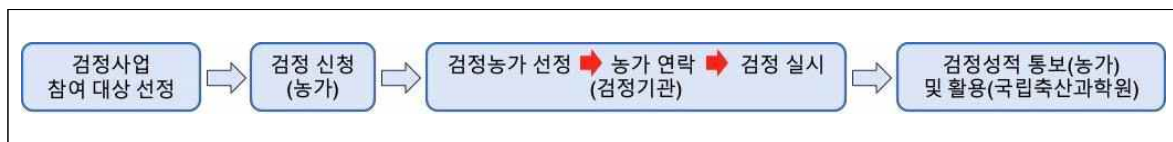
- 종축검정기관은 축종별로 지정되어 있음.

표 5-1. 축종별 종축검정기관

축종	지정기관
한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젖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육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돼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양계협회
오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한국오리협회

- 검정기관이 검정사업 참여 대상을 선정하면, 이에 따라 농가가 검정을 신청함. 검정기관은 검정농가를 선정하고, 농가에 연락하여 검정을 실시함. 그리고 검정 성적을 평가하여 농가에 통보함. 검정성적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활용하게 됨.

그림 5-1. 가축의 검정 절차



- 가축검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에 따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우·젓소

- 가. “당대검정”이라 함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선대 기록,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후대검정”이라 함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 다. “검정소후대검정”이라 함은 한우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후보씨수소”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당대검정 등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 마. “보증씨수소”라 함은 종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 바. “당대검정우”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 사. “후대검정우”라 함은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를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 아. “씨암소”라 함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자. “교배암소”라 함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 차. “번식능력검정”이라 함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카. “유우군능력검정”이라 함은 젓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타. “젓소검정소”라 함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젓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파. “검정동기군”이라 함은 같은 장소에서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

2. 돼지

- 가. “능력검정”이라 함은 씨돼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나. “산육검정”이라 함은 우량 씨돼지를 선발·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돼지와 씨암돼지의 산육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산자검정”이라 함은 돼지의 품종특성을 유지·보전하고, 씨암돼지의 새끼 생산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능력검정원(이하 “검정원”으로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지정된 검정기관의 소속검정원과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능력검정자격을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마. “검정소검정”이라 함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바. “농장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정된 검정기관 소속검정원의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입회검정과 종돈업등록업체 소속검정원이 실시하는 자가검정을 말한다.
- 사. “검정동기군”이라 함은 능력검정을 착수하기 위하여 모집한 검정대상 개체들의 집단을 말한다.

3. 종계

- 가. “순계(PL = Pure Line)”라 함은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닭으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닭을 말하며 “원종계(GPS = Grand Parent Stock)”라 함은 종계(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을 말하고 “종계(PS = Parent Stock)”라 함은 원종계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계(C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하며 “실용계(CC = Commercial Chick)”라 함은 종계에서 생산된 닭을 말한다.
- 나. “순계검정”이라 함은 닭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다. “중계검정“이라 함은 원종계 및 종계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라.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종계·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마.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계(PS)에서 생산된 실용계(CC)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소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4. 종오리

- 가. “순오리(PL)“라 함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라 함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중오리(PS)“라 함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라 함은 중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 나. “순중오리 검정“이라 함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다. “일반검정“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오리 품종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중오리(PS)에서 생산된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5. 공통

- 가. “등록기관“ 또는 “검정기관“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나. “가축개량협의회“라 함은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검정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심의·자문기구로 검정방법, 후보 및 보증수수료 선발 등 가축개량 기술을 자문한다.

제3조(적용) 검정기관은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축종별 검정실시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우 검정기준

제4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및 검정방법) ① 당대검정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씨암소에서 태어난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우한 수송아지일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유전자검사 결과[별표 4] 친자가 확인된 것
 3. 당대검정우나 당대검정우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 ② 검정방법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되, 예비검정은 축군 평균월령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하며, 동 기간 중에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에 대한 적응여부를 검정하고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170일간 실시한다. 다만, 축군은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 ③ 당대검정우는 다량의 유전체정보를 포함하여 유전능력평가(유전체 육종가) 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한다.

제5조(당대검정 조사사항) 당대검정우의 체중, 체척,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외모심사,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및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자형 분석은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체중은 개시 시, 축군의 평균일령 270일령, 종료 시에 측정하되 측정당일 사료급여 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 체척은 종료 시에 측정하되,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고장, 요각폭, 곤폭, 좌골폭의 10개 부위를 측정한다.
3. 사료섭취량은 매 15일 간격으로 조사한 급여량에서 잔여량을 감하여 구하고, 사료섭취량을 해당기간의 증체량으로 나누어 사료요구율을 구한다.
4. 외모심사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거 종료 시에 실시한다.
5. 정액검사는 [별표 1]에 의한다.
6. 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종료 시 실시하며,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등을 측정한다.
7.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자형 분석은 검정기간 중 실시할 수 있고, 유전체 분석 원본자료는 유전자형 스캔 파일로 저장, 분석샘플명은 등록번호로 하며 유전체 분석자료에 대한 정리파일을 함께 보관한다.

제6조(당대검정자료 제출) 당대검정우에서 후보수수료를 선발하고자 할 경우 검정기관 및 등록기관은 당대검정

조사자료 등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씨수소 선발대상) ① 후대검정 대상이 되는 후보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대검정에 의하여 선발된 것
 2. 한우사육농가 또는 가축개량기관 보유 종축 중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능력이 우수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것
- ② 제1항에 의한 후보씨수소는 다음 기준에 의거 심사·선발한다. 단, 당대검정에 의해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생략할 수 있다.
1. 나이는 12~18개월령일 것
 2. [별표 1]에 의한 정액검사에 합격한 것
 3. 후보씨수소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불량형질이 나타나지 않은 것

제8조(후보씨수소 선발)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정한 선발지수식 등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후보씨수소를 선발한다.

제9조(후보씨수소 선발제외) 당대검정우 중 외모심사 결과 78점 미만인 경우와 정액검사에서 불합격된 것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교배암소) ① 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
2.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 ② 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체중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검정기간과 후대검정우 선발기준) ① 검정소후대검정은 검정기관에서 실시하고, 후대검정우에 대한 검정기간은 예비검정과 본검정으로 구분하며, 예비검정은 축군평균 5개월령에서 6개월령 사이에 최소 20일 내외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질병검사와 사육환경 적응여부를 검정하며, 본검정은 축군의 평균 월령이 가급적 6개월령일 때 개시하여 530일동안 실시한다. 단, 축군은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에 교배 후 생산된 개체로 한정한다.

- ②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씨수소 1두당 교배암소 40두 이상을 교배시켜 생산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별표 4] 친자가 확인된 수송아지가 6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모는 기형 및 유전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검정완료두수는 후보씨수소 1두당 6두 이상으로 한다.
- ③ 농장후대검정은 한우사육농가에서 실시하며, 검정축군의 평균일령이 180일령에 개시하여 출하 시까지 실시한다. 단, 축군의 일령범위는 평균값 ± 30 일 이내로 한다.
- ④ 농장검정 후대검정우는 후보씨수소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된 수송아지로 검정완료두수가 한우농가당 4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검정기관은 한우농가당 3두 이하로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후대검정우 중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저하게 발육이 떨어지는 것
 2. 사고에 의해 계속 사육이 어려운 것
 3. 부계 형매 중(후보씨수소 자손) 유전적 결함이 발견된 것
 4. 제13조 규정에 의해 실격 처리된 후보씨수소의 자손

제12조(후대검정 조사사항) ① 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체중은 제5조 제1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에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제5조 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
3.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검정축군의 평균일령 360일령과 종료 시에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분석을 위하여 검정기관에서 촬영한다.
4. 체척은 제5조 제2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
5.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의한다.

② 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중은 제5조 제1호에 의하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에 측정한다.
2. 한우초음파생체단층촬영은 710일령에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지방함량 분석을 위하여 검정기관에서 촬영

<p>한다.</p> <p>3. 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의하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p> <p>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p> <p>제13조(후보씨수소의 실격) 후대검정 중에 있는 후보씨수소 중 정액성상 이상, 질병 및 외상 등으로 도태사유가 발생한 것은 검정기관장이 실격시킬 수 있다.</p> <p>제14조(보증씨수소 선발) ① 후대검정이 완료된 후보씨수소는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성적을 분석·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보증씨수소로 선발한다.</p> <p>제15조(씨수소 정액생산·보관·처리) ① 후대검정을 개시한 후보씨수소는 제14조 규정에 의해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이전까지 냉동정액을 생산, 보관하여야 하며, 선발에서 탈락된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폐기처분하고,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정액은 인공수정용으로 활용한다.</p> <p>② 보증씨수소로 선발되기 전에 생산된 후보씨수소 정액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우 사육농가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p> <p>③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p> <p>제16조(사양관리) ① 검정기관의 당대검정우, 후대검정우, 씨암소 및 교배암소의 사양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p> <p>② 농장후대검정우 및 농가에서 관리하는 씨암소와 교배암소는 영양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양기준에 의한다.</p>
<p>제3장 젖소 검정기준</p> <p>제17조(젖소검정) ① 젖소의 검정은 검정목적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과 암소의 산유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는 유우군능력검정으로 구분한다.</p> <p>② 씨수소 선발을 위한 검정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당대검정”과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p> <p>③ 유우군능력검정은 농가 또는 기관, 단체가 보유한 전체 암소 우군을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정당일 검정원 입회여부에 따라 “입회검정”과 “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p> <p>제18조(씨암소의 자격) 당대검정우 생산을 위한 씨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산차 이상으로 정상적인 번식기록을 갖고 외모심사 점수는 80점 이상인 것 2. 산유능력은 1일 2회, 305일 착유, 305일 보정 기록을 기준으로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선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이 상위 5%이내인 것 3. 등록기관에 혈통등록된 것 4. 만성질환이 없는 것 <p>제19조(당대검정우의 조건) 당대검정우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 2. 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3. 보증씨수소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p>② 제1항에 따른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제20조(당대검정우의 사양기준) 검정기관은 당대검정우에 대해 [별표 7]의 사양기준에 따라 관리한다.</p> <p>제21조(후보씨수소 선발심사) ① 검정기관은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우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모심사 : 12~14개월령에 1회 실시하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2. 발육상태 : 6개월령, 12개월령 체중 3. 성욕 및 정액검사 : 12~16개월령에 실시하며 [별표 1]의 정액검사기준에 심사 <p>② 심사결과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것 2. [별표 6]의 월령별 체중의 90% 이상인 것 3. [별표 1]의 정액검사 항목별 기준 및 등급기준에 적합한 것 <p>제22조(후보씨수소의 선발) 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 전문가협의를 통해 후보씨수소를 선발한다.</p>

제23조(교배암소의 자격) 검정말소 생산을 위하여 후보씨수소의 정액으로 교배시키는 교배대상 암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유우군능력검정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보유 젖소
3. 만성질환이 없는 것

제24조(검정말소의 생산) ① 검정말소를 생산·확보하기 위한 교배암소는 후보씨수소당 200두 이상으로 한다.

- ② 후보씨수소당 검정해야 할 검정말소는 20두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검정말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 ① 검정말소 생산을 위한 교배방법은 인공수정을 원칙으로 하며, 수정회수는 3발정 주기까지 적용한다.

- ② 후보씨수소별 교배계획은 검정기관에서 무작위로 설계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연중 고르게 수태되도록 한다.

제26조(검정말소 관리) 검정말소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초유급여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 포유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한다.
2. 검정말소의 외모에 기형 및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유전자검사[별표 4]를 통하여 친자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검정말소에 대한 초종부는 14개월령 이상으로 체중 350kg 이상이 되었을 때 실시한다.
4. 검정말소의 초발정부터 임신·분만까지 일련의 번식 상황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5. 검정말소의 포유기간에서부터 검정종료시까지의 사양관리는 최신 한국사양표준에 준한다.

제27조(조사항목) ① 후대검정에서 검정말소의 조사항목은 번식능력과 산유능력으로 구분한다.

- ② 번식능력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번식상황 : 생년월일, 등록번호(부, 모 포함), 개체식별번호(바코드구표), 종부일, 인공수정기록, 종부방법, 농장번호

2. 분만상황 : 분만일, 정상분만여부, 유산, 사산, 성별, 산차수, 분만난이도, 건유일, 농장번호

- ③ 산유능력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유지방,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

2. 착유일수, 1일 착유회수 등

- ④ 검정말소에 대하여는 외모 및 선형심사를 실시한다.

- ⑤ 상기 조사항목과 이외의 필요항목에 대한 조사기입요령은 [별표 8]와 같다.

제28조(검정의 중지) 검정말소에 대한 각호 1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검정을 중지하거나 검정성적을 후보씨수소 능력평가에서 제외시킨다.

1. 검정말소가 후보씨수소에서 기인하는 유전적 불량형질의 발현이 인정될 때
2. 만성질환이 있는 것

제29조(후보씨수소의 정액 생산관리) ① 후보씨수소는 후대검정 참여 암소 교배용으로 검정종료 시까지 냉동정액으로 300두 교배분 이상 생산한다.

- ② 검정기관은 유전자원 보존연구 등을 위하여 모든 씨수소의 정액을 일정량 보존한다.

제30조(후대검정 성적평가 및 보증씨수소 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 심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별 후대검정 성적을 토대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

1. 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

2. 보증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검정대상축) 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축은 종축등록기관에 개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32조(대상농가 및 지역선정) ① 농장검정은 다음 기준에 의거 검정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전·기업 낙농목장
2. 검정원의 입회검정 및 시료채취 운반이 가능한 지역
3. 검정동기군 형성이 가능한 지역

- ② 검정농가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검정사업을 이해하고 검정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검정이 가능한 농가

2. 조사료 확보가 가능하며, 암소 10두 이상으로 착유두수를 5두 이상 보유한 농가

3. 젖소개량에 의욕이 높고, 검정말소를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혈통관리를 할 수 있는 농가

제33조(검정원의 자격) ① 검정원은 전담검정원과 촉탁검정원으로 구분한다.

② 검정원은 가축개량총괄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34조(검정원의 업무) 전담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목장의 선정
2. 검정우 명부작성
3. 입회검정 및 자가검정 지도
4. 우유성분 및 검정성적 기록
5. 검정기록 작성 및 농가의 사양, 경영개선 지도
6. 검정 기자재 관리
7. 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제35조(검정횟수) 검정횟수는 생애(生涯)검정을 원칙으로 검정농기당 매월 1회 및 측정당일 연속 2회(당일 오전·오후 또는 당일 오후·익일 오전)를 기준으로 한다.

제36조(검정절차) 검정원은 다음 절차에 의거 검정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원은 제37조 제3항의 검정간격 내에서 불특정일에 불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검정원은 검정당일 착유시간 전에 검정우를 개체별로 확인한다.
3. 검정원은 검정기록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측정한다.
4. 조사기록상황은 검정기록표로 작성하고 검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5. 검정기관은 검정기록표에 의거 검정성적표를 작성, 직접 또는 젖소 검정소를 통하여 검정농가에 통보한다.
6. 검정기관 및 젖소 검정소(조합)는 검정성적표를 참고하여 검정 참여농가에 개량, 사양, 경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37조(검정의 중지) 검정우에 질병, 생리적 이유, 검정우 도태, 매각 등으로 검정기록이 얻어질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검정우의 검정을 중지한다.

제38조(검정기록 및 평가) ① 검정기록은 분만후 제6일째 아침 착유부터 비유기 끝까지 실시하고 산유량 기록은 분만일로부터 기록한다.

② 첫 검정기록은 적어도 분만후 6~45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검정일 간격은 30 ± 5 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착유회수는 1일 2회 착유를 기준으로 하되, 1일 2회 이상 착유시는 매 착유시마다 기록하고, 305일 보정성적 평가시는 [별표 9]의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2회 착유기준으로 보정한다.

⑤ 착유기간이 305일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305일로 보정하며, 착유일수가 75일 이하는 305일로 보정할 수 없다.

⑥ 검정중 임신후 180일 이내에 유산, 사산할 경우는 기록의 중지없이 계속검정을 실시하여 건유일 또는 305일 착유로 1비유기의 검정이 종료되며, 임신후 180일이 경과하여 유산, 사산할 경우는 유산 당일부터 다음 산차 및 새로운 비유기로 본다.

제39조(유성분 분석결과와 정확성 관리) ① 젖소 검정소에서 유성분분석기를 활용하여 분석·활용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에서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은 연 2회 이상 젖소 검정소의 유성분 분석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점검결과 동일 기종에서 1개 항목이상의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젖소 검정소 자체 유성분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

제40조(검정성적의 활용) 검정기관의 검정성적을 매년 평가하여 능력검정 참여농가의 경영 및 사양관리 지도 등에 활용한다.

제41조(검정농가의 준수사항) ① 검정농가는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검정농가는 검정원의 검정기록 확인을 위한 재검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다.

④ 검정당일도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시켜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의 사용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돼지 검정기준

제42조(능력검정방법) 돼지능력 검정은 “산육검정”과 “산자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3조(산육능력검정방법) 산육능력검정은 검정소검정과 농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4조(검정소 검정) ① 검정소 검정은 버크셔, 렌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로 한다.

② 검정돈은 다음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1.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씨수돼지와 암수돼지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서 동복 전두수 자돈등기가 된 종돈

2. 정상적인 젖꼭지가 6쌍 이상

3. 유전적인 불량형질이 없는 한배 새끼중에서 선발된 자돈

4. 검정개시전 돼지단독,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파스투렐라비염, 홍막폐렴 등의 예방 주사를 필하고 적리, 오제스키, 음이 없는 자돈

③ 검정돈은 검정돈사에서 입식(27~32kg)후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35kg전후 도달 시까지 예비사육기간을 두며, 35kg 도달 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90kg전후에 도달 시 검정을 종료한다. 단, 입식체중이 35kg를 초과한 경우 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④ 검정개시돈의 35kg 도달일령 및 90kg 도달일령은 아래와 같이 보정한다.

1. 3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35kg-측정체중)×(측정시일령-35.3)/측정체중

2. 90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90kg-측정체중)×(측정시일령-38)/측정체중

⑤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cm, 길이 350cm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cm, 길이 270cm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⑥ 검정기간중의 사양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검정돈을 입식한 후 검정동기군의 평균 체중이 35kg 도달 시까지의 예비사육기간 중에 검정사료로 순차시키고 내부기생충을 구제한다.

2. 검정용 사료를 무제한 급여한다. 이 경우 검정용 사료는 [별표 10]에서 정한 영양수준, 검정사료 배합비율에 적합하여야 하며,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비타민 및 첨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3. 급수는 자유 급수한다.

4. 기타 사양관리는 검정기관 관행에 의한다.

⑦ 검정기간 중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체중은 본 검정 개시 시와 종료 시에 측정한다.

2. 사료섭취량은 돈방별로 조사하여 검정종료시 사료요구율을 조사한다.

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kg 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

가.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

나.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

4.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90kg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 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 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

가.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90kg-측정체중)×측정시 등지방 두께 ÷ (측정체중-11.34)]

나.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 ÷ (측정시 체중 + 70.31)]

5.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90kg 도달시기에 일반체형, 사지의 상태, 번식능력(생식기의 발육, 성욕상태)등 종돈의 적격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중지한다.

1. 검정돈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절박도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동복내 개체간의 차이가 20kg이상일 경우

3. 지체불량에 의한 기립불능, 기타질병 등으로 검정을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⑨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2]의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⑩ 검정결과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장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한다.

제45조(농장검정) ① 농장검정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로 한다.

② 검정종돈의 조건은 제46조제2항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은 체중이 70~110kg(재래돼지는 50~80kg)에 도달하였을 때, 90kg 도달일령,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을 조사하여 체중 90kg(재래돼지는 70kg)을 기준으로 생시체중과 검정 개시체중을 측정하지않는 경우 아래 1-1과 같이 1일 평균 증체량을 계산하고, 생시와 35kg전 후 검정개시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 자돈기 1일 평균 증체량과 육성기 1일 평균 증체량을 아래 1-2와 같이 계산 한다.

1-1.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1.0kg) ÷ (종료일령)으로 하고, 이 경우 종료체중은 90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측정한다.

1-2. 자돈기 1일 평균증체량은 (35kg 전후 개시체중 - 생시체중) ÷ (35kg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육성기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 - 35kg 전후 개시체중) ÷ (종료일령 - 35kg전후 체중측정 일령)으로 한다.

2. 90kg 도달일령은 검정종료시 종료일령과 종료체중을 조사하여 90kg 도달시의 일령으로 보정한다.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 등심깊이 및 근내지방은 검정동기군의 평균체중이 90kg(재래돼지는 70kg) 전후가 되었을 때 초음파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조사하며, 측정기기가 A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늑골), 허리(최후요추)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이용하고 측정기기가 B모드인 경우 측정부위는 등(제10늑골)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 5cm 부분을 측정하되 등심단면적과 등지방두께 측정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측정하고 등심깊이와 근내지방 측정시에는 측정부위를 기준으로 수평으로 측정한다.

가. 보정된 90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일령 - 38) ÷ 측정시 체중]

나.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11.34)], 단, 재래돼지는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다. 보정된 등지방두께 = 측정시 등지방두께 + [(7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지방두께 ÷ (측정체중-4.3)]

라.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90kg-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 ÷ (측정시 체중 + 70.31)]

3. 사료요구율을 측정할 때는 체중 30kg 전후의 자돈을 사료효율측정장치가 있는 돈방에 입식하여 7일간 적응기간 후에 검정을 개시하며, 개시체중 측정과 검정기간의 사료섭취량 총합을 측정한다.

가. 사료요구율 = 사료섭취량 ÷ (검정종료체중 - 검정개시체중)

나. 잉여 사료섭취량 = 예측 사료섭취량 - 실제 사료섭취량

4. 종돈의 적격성은 일반체형, 사지상태, 번식능력(생식기 발육, 성욕상태) 등을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하는 “가축외모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5. 검정성적의 판정은 [별표 13]의 농장검정용 선발지수식에 의해 결정한다.

제46조(산자검정) ① 산자검정은 원종돈을 대상으로 한배새끼의 분만일로부터 자돈의 이유시까지 실시한다.

② 사료급여는 최근 한국사양표준에 준하고, 교배는 혈통보전을 위하여 순종 교배를 실시하며, 검정기간 동안의 사양관리는 동일한 조건하의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항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배횟수는 한 번의 교배에 웅돈 또는 정액을 사용한 횟수로 표시한다.

2. 초종부일령은 출생이후 모돈의 최초 교배일까지의 기간으로 표시한다.

3. 수태율은 종부두수에 대한 수태두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4. 분만율은 분만예정 복수중 분만한 모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임신기간은 최종 종부일로부터 분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6. 복당총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사산과 미이라를 포함한 전두수로 한다.

7. 생시 체중은 한 모돈이 출산한 생존 및 사산을 포함한 모든 자돈의 개체별 체중으로 한다.

8. 복당 생존산자수는 한배새끼의 자돈중 미이라와 사산을 제외한 두수로 한다.

9. 복당 포유개시 두수는 복당생존 산자수 중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돈두수로 한다.

10. 젖꼭지는 좌·우 젖꼭지 수를 각각 기록한다.

11. 이유시 복당체중은 이유한 자돈들의 총체중으로 한다.

12. 이유육성률은 포유개시 두수 중 이유된 자돈의 비율로 표시한다.

13. 이유자돈수는 젖을 떼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자돈수로 표시한다.

④ 산자검정 성적평가는 검정기관이 검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산차별 보정은 [별표 13]의 보정계수를 참고하여 보정한다.

제5장 닭 검정기준

제47조(검정의 의무)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계업 허가업체로서 국내 닭 육종농장 및 외국으로부터 원종계 및 종계를 도입한 자는 매년 경제능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일반검정방법 등) ①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계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검사시 외국으로부터 직수입한 종계(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를,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어린병아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추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 종계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계는 현지 종계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계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종계는 80주령까지로 한다.

② 일반검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닭
2.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서 생산된 닭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닭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 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제49조(능력검정방법) “순계검정”과 “종계검정” 및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50조(순계검정방법) 순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51조(난용종 순계검정) ① 난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계종당 암컷 8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율 : 부화 입란수에 대한 수정란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2. 부화율 : 수정란에 대한 발생수수의 백분비로 표시한다.
 3. 육성기생존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4. 성계생존율 : 18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5. 첫 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6. 18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18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
 7. 40주 및 72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의 체중으로 한다.
 8. 첫 산란난중 : 첫 산란 개시일령의 난중으로 한다.
 9. 40주 및 72주령 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38-40주령 및 70-72주령 사이의 평균난중으로 한다.
 10. 40주 및 72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40주령 및 72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 ④ 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 및 체중을 고려한 선발지수법에 의거 가계 및 개체 선발을 실시하고, 선발지수는 계종당 200수(암컷 160수, 수컷 40수) 내외로 한다.
- ⑤ 계종당 가계조성은 25-3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5-6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 ⑥ 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실시한다.
- ⑦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육용종의 순계검정) ① 육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3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닭은 준육용계 기준에 따른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률, 부화율 : 제51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
2. 육추율 : 첫 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한다.
3.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3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한다.
4. 성계생존율 : 24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5. 6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6. 23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23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7. 40주령 체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 종료 시의 체중으로 한다.
8. 첫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9. 64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64주령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10. 64주령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62-64주령 사이의 평균 난중으로 한다.

11.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④ 선발은 주 경제형질인 6주령체중, 체형, 시산일령, 산란수, 난중을 고려한 선발기준에 의거 가계 및 개체를 선발하며, 계종당 암컷 300수, 수컷 100수 합계 400수 내외로 한다.

⑤ 계종당 가계조성은 30-60수 수컷가계와 수컷가계당 8-10수의 암컷가계를 조성한다.

⑥ 교배는 순수혈통 보전을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계종내 교배를 한다.

⑦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제53조(중계검정방법) 중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54조(난용종 중계검정) ① 난용종 중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를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관리, 검정기간 중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1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육용종의 중계검정) ① 육용종 중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수수는 계종당 암컷 1,000수, 수컷 200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한다.

③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제52조제3항에 준한다. 다만, 토종중계의 경우 산란수와 난중을 80주령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④ 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제56조(경제능력검정방법) 경제능력검정은 산란계경제능력검정과 육용계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제57조(산란계 경제능력검정방법) ① 난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 검정개시 수수는 ①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1개 구를 4반복으로 하고 1반복당 30수 이상으로 하며,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으로 한다. 단, 필요시 검정기관장은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 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④ 검정기간 중 도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육성률 : 첫 모이수수에 대한 17주령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성계생존율 : 18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성숙일령 : 검정계군의 산란율이 연속 2일 50%에 달한 전일의 일령으로 한다.

4. 산란율(Hen Day) : 성성숙일령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연 생존수수에 대한 총산란개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5. 산란지수(Hen House Index)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산란개수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6. 난중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총 난중을 총 산란개수로 나눈 중량으로 표시한다.

7. 사료요구율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계란 1kg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 중량 비로 표시한다.

8. 체중 : 42주령종료일 및 검정종료일에 측정된 검정계의 평균체중으로 한다.

9. 사료소비량 : 첫모이준 날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표시하되 육성, 산란기별로 표시한다.

10. 난질 : 30주령, 50주령, 72주령에 각각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난형, 난각색, 하우유닛(HU), 난황색, 난각두께를 조사한다.

제58조(육용계 경제능력검정방법) ① 육용종 실용계(CC)를 검정대상으로 하며, 동일계통의 2배 이상의 종란 중에서 검정기관이 정한 소요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집란하며, 검정기관에서 자체 부화한다.

② 검정개시 수수는 ①항에 의거 부화한 초생추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되 1개구를 240수로 4반복을 하며 1반복당 60수 이상으로 실시하며 검정기간은 첫 모이를 준 날로부터 6주-10주령으로 한다. 단, 검정기관장은 검정개시 수수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③ 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④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 시 검정기관장

판단 하에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 중의 조사 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검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검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형질을 추가로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생존율 : 검정개시 수수에 대한 검정 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 모이를 주기 직전과 2, 4, 5주말(토종닭은 6주, 8주, 10주말까지)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 조사는 검정 종료일에 측정한다.
3. 사료소비량 : 체중조사와 동시에 기간 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
4. 사료요구율 :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 증체에 소요된 사료증량비로 표시한다.
5. 생산지수 : $[\text{평균생체중(g)} \times \text{생존율(\%)}] \div [\text{사육기간(일)} \times \text{사료요구율}] \div 10$

제6장 오리 검정기준

제59조(검정대상 및 방법 등) ① 종오리의 일반검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심사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종오리(P.L, G.P.S, P.S 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를, 수입된 종오리(P.L,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 검사한다.
2. 종오리검사 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릿수를 확인한다.
3. 종오리검사의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주)까지로 한다.

② 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
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제60조(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① 종오리의 능력검정은 “종오리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능력검정은 종오리 또는 육용종 실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한다.

제61조(종오리검정 대상) 종오리검정은 육용 종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2조(종오리검정 방법) ①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육추율 : 첫모이 수수에 대한 8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육성률 : 9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0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표시한다.
3. 성오리 생존율 : 20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2주령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4.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8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5. 20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20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6. 72주령 체중(첫 모이준 날로부터 72주령 종료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7. 첫 산란일령(50%)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8. 72주령 산란수(72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times 2 \div$ (개시수수 + 72주령 종료수수))
9.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10.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제63조(경제능력검정)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4조(경제능력검정 방법) ① 육용종 실용오리(C.D)를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정대상은 사육수수규모에 따라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병아리의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②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토종오리 8주령)으로 한다.

③ 검정오리는 검정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양관리하는 다른 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율 : 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토종오리 8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모이를 주기 직전과 3, 6주말(출하시, 토종오리 8주)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 종료일에 측정한다.
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기타

제65조(검정결과 처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종료 시 검정자료 및 검정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종계·종오리 일반검정 결과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 ②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검정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정기관과 등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검정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등록기관은 통보받은 결과를 등록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① 한우와 젃소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정기관장이 가축개량총괄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② 돼지, 닭, 오리 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5.3. 사후관리

- 축종별 감정성적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집하여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종축 선발에 활용함.

5.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한우개량, 도체중·근내지방 위주의 단순식 보완해야(Farminsight, 2023. 03. 31.)
 -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정된 한우의 중요한 개량 목표 중 하나인 도체중 향상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긴 했으나, 정작 지육만 많이 나가는 한우는 중도매인들에게 기피대상이며, 도체중은 크나 등심의 양은 적고 불가식 지방과 정육 부위 수율이 많이 나가는 ‘비규격화된 한우’의 출하가 많아지는 등 실제 필요한 형질의 한우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
 - 이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한우를 위한 개량사업이 발전해나가기 위해선 한우를 실제 구매하는 중도매인 등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5.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가축의 감정>에 대한 「축산법」의 행정규제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개선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행 내용을 그대로 존속하길 권장함.
 - 가축 개량 및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가축의 검정을 위한 절차가 합리적이고, 가축의 검정이 가축 사육 농가의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지 않음.
 - 검정기관 지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기준이 보이지 않으며, 현재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관련 협회에 의해 검정되어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됨.
- 가축 개량은 축산농가의 생산성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가축의 검정은 종축의 능력을 검정하는 수단으로써 검정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며, 특히 체계적으로 유전자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종축별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검정 선정하여, 가축의 개량을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기본적인 제도로 존속이 필요함.

6. 토종가축의 인정

6.1. 개요 및 관련 법령

- 201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온 토종가축의 인정은 현재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5호(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근거함.
- <토종가축의 인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음.
 -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
 - 국내 토종가축의 유지·보전과 사육농가의 소득 향상
 - 소비자에게 토종축산물의 올바른 구매지표 제공
-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종가축 인정기관에 신청하여 접수하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이 서류검토 후 심사함. 해당 기준을 통과한 농가는 <토종가축 축산물> 표시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림 6-1. 토종가축의 인정 표시

표 6-1. 연도별 토증가축 인정신청 처리 현황(단위 : 마리, 군(별))

연도	축종	신청(A)	처리결과(건,%)			
			인정(B)	부적합	기타, 처리중	인정률
'19	한우	700	591	12	97	84.4
'20		875	738	15	122	84.3
'21		1,036	987	21	28	95.3
'19	토종돼지	21	21	-	-	100
'20		-	-	-	-	-
'21		764	764	-	-	100
'19	토종닭	4,420	4,420	-	-	100
'20		-	-	-	-	-
'21		2,103	2,103	-	-	100
'19	토종오리	-	-	-	-	-
'20		8,000	8,000	-	-	100
'21		-	-	-	-	-
'19	토종말	580	580	-	-	100
'20		644	644	-	-	100
'21		731	731	-	-	100
'19	토종별	397	397	-	-	100
'20		330	330	-	-	100
'21		-	-	-	-	-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축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알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등으로 정한다.

제3조(인정기준) ① 토종가축별 품종 또는 계통(이하 “품종 등”이라 한다)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한우·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재래돼지·제주마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인정대상 가축의 추가) ① 토종가축을 사육·관리하는 자가 토종가축 인정대상 가축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초축 조성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조성경위, 외모 특징 등)
2. 품종 등 관리 기록(세대별 혈통기록, 부화 및 입추내역, 선발방법 및 도태내역 등)
3. 체중 등 능력 기록
4.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생산내역,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 마릿수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준의 추가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 생산자단체 및 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대상 토종가축을 추가한다.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제6조(인정기관의 조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해당 토종가축의 특징 등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실시방법 등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 신청의 안내) ①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 신청) ①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와 함께 인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육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등 자료
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제9조(인정 심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한우·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재래돼지·제주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인정기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 심사결과와 통보) ①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심사결과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는 경우 신규 신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②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인정기관의 지도감독)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조사결과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기관에서 인정가축의 관리 등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정의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의무 등) ① 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 및 인정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 인정신청서,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보존
2. 인정을 받은 자 : 인정받은 토종가축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비치·보존

제16조(기타사항) 토종가축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시행한다.

6.2. 인증 절차 및 기준

-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5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됨.

표 6-2. 축종별 토종가축 인정기관

축종	지정기관
한우·토종돼지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토종닭	(사) 한국토종닭협회
토종오리	(사) 한국오리협회
토종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토종별	(사) 한국한봉협회

-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하는 농가가 인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 기관은 신청서와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농가에 통보함. 인정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인정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게 됨.
 - 인정기관은 심사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함.

그림 6-1. 토종가축 인정 절차



표 6-3. 토종가축별 품종 인정기준

1. 한우		
가. 총괄		
구분	구분 기준	표시
종축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한우(종축등록)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제주흑우(종축) 제주흑우
한우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백반 및 흑반의 지름이 생후 2개월 이내 10cm 이내의 작은 백반과 흑반을 가진 소 -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미한 흑모와 흑반우 -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한우(비경흑) 한우(면백) 한우(흑반) 한우(귀속흑모) 한우(가슴백반) 등으로 특징을 구분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한우(이마속모) " (전신속모)
우	○ 칩한우(칩소)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부모 모두 칩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 부모 모두 칩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 -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나. 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1) 일반한우

부위	부위별 특징
모색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 갈색), 적갈색(붉은 갈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옅은 색을 나타냄 - 귀·눈주위·비경(코) 근처에 흑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을 나타내기도 함
체형	- 유용종(썰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건봉(어깨봉우리)이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 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 대부분 살(肉)색이나 흑색, 회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건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건봉 확인
전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겹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체발굽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2) 제주흑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띠며 모색은 50%가 검은색, 40% 흑갈색, 10%가 황색으로 발현됨 - 눈, 비경, 꼬리와 발굽은 검다가 생후 5개월령에 흑우의 모색으로 발현됨 - 복부 및 유방주위에 백반이 나타나는 개체가 있음
체 형	- 육용종(쇠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빨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빨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이나 후향 및 하향각등 골고루 나타남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 대부분 흑색이나 살(肉)색이나 회색도 나타남 - 제주 흑우의 경우 내륙흑우와 달리 비경주위에 흰테두리가 없음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견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체발굽	- 발굽은 곧바로 뺨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흑색임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3) 칠향우(칩소)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 줄무늬가 몸 전체에 있음 - 모색은 주로 호반무늬:흑색:황색비율이 3:3:4의 비율로 나타나며 황만선도 보임

	- 모색이 검더라도 귓속과 뺨과 뺨 사이의 모색이 황색으로 발현됨
체 형	- 유용종(췌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이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뺨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뺨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 (코)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뺨,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가 있으며, 비경주위는 흰 테두리를 보임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가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검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의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 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체발굽	- 발굽은 곧바로 뺨는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2. 토종돼지

가. 심사시기 : 생후 5개월령 이후

나. 외모특징

구 분	특 징
모색	몸 전체가 순흑색이며 거친(조강모) 것
머리	얼굴이 세장(가늘고 긴형) 돌출로 곧으며, 양 눈 사이에 세로주름이 있는 것
귀	하수되지 않고 직립(상향, 전향)인 것
복부	몸통이 팽대하고 배가 처지며, 옆구리에 주름이 있는 것
둔부	엉덩이가 협소하고 빈약한 것

다. 실격조건

- (1)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 (2) 귀가 심하게 늘어진 것.
- (3)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 (4)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 (5)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토종닭

가. 심사시기 : 20주령 이내

나. 심사기준 :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다. 계통별 기준

(1) 재래종(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색종 등)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체중(Weight)	수탉의 체중은 1.2~4kg 이고, 암탉은 1.1~1.7kg 정도이다.	4
2.균형(Symmetry) 및 상태(Condition)	체형은 장방형으로 날씬한 모양이고, 재래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8
3.벃(Comb)	벃의 모양은 홀벃이나 관침이 5개 내외로 직립되어있고 두께는 얇으며 벃의 색깔은 적갈색재래닭 및 황갈색재래닭 내종은 선홍색이나 흑색재래닭은 암적색을 띠고 있다.	6
4.부리(Beak)-모양, 색깔	부리는 모든 내종에서 단단하며 조금 앞쪽으로 굽어 있다	4
5.머리(Head)-모양, 색깔	머리는 중간크기를 가지고 있고 깊고 넓으며 내종별 머리색깔은 적갈색재래닭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흑색재래닭은 흑색을 띠고 있다.	4
6.눈(Eyes)-모양, 색깔	눈은 중간크기를 가지고 있고 맑고 투명하며, 눈의 색깔은 적갈색 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선홍색이고 흑색재래닭은 적색과 흑적색을 띠고 있다.	4
7.고기수염(Wattles)-모양	고기수염은 내종별로 길게 늘어져 있고 고기수염의 색깔은 적갈색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선홍색이고 흑색재래닭은 적색과 흑적색을 띠고 있다.	2
8.귀뿔(Ear Lobes)-모양, 색깔	중간크기의 타원형을 가지고 있고 적갈색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은 선홍색과 백색을 띠고 있고 흑색재래닭은 적색과 백색을 띠고 있다.	4
9.목(Neck)-모양, 색깔	목은 길고 직립하며 조금 앞으로 굽어져 있고 목깃털은 많고 길어서 등의 앞부분을 덮고 있고, 적갈색재래닭의 피모는 적갈색이나 적녹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 회색재래닭은 회색이다.	10
10.날개(Wings)-모양, 색깔	날개는 조금 길고 나르는 힘이 강하다. 적갈색재래닭의 날개 색깔은 적갈색과 흑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과 흑색이 있으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 회색재래닭은 회색이다.	10
11.등(Back)-모양, 색깔	등은 직선으로 넓이는 중정도이고 뒤쪽으로 경사져 있으며 적갈색재래닭의 색깔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 흑색 재래닭은 흑색, 회색재래닭은 회색이다.	10
12.꼬리(Tail)-모양, 색깔	꼬리깃은 발육이 좋으며 길고 아름답다. 적갈색재래닭의 암컷의 꼬리의 색깔은 녹흑색이고 수컷은 적갈색이고 때로는 흑색도 있다. 황갈색재래닭의 수컷은 녹흑색이고 암컷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10
13.몸통(Body)-모양, 색깔	가슴은 둥글고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앞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적갈색재래닭 피모색깔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 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8
14.가슴(Breast)-모양, 색깔	배는 타원형을 중등정도 발달되어 있으며 적갈색재래닭 피모색깔은 적갈색이고 황갈색재래닭은 황갈색이며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 회색재래닭은 회색이다.	10
15.다리와 발가락(Legs and Toes)-모양, 색깔	다리의 길이는 중등정도이고 깃털이 밀생되어 있다. 발가락은 잘 발달되어 있고 발가락 수는 4개이고 우모가 없다. 적갈색재래닭과 황갈색재래닭의 다리 피부색깔은 황갈색이고 백색재래닭은 백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적갈색재래닭 및 황갈색재래닭의 발가락 피부색은 황갈색과 회흑색이고 백색재래닭은 황갈색과 회흑색이고 흑색재래닭은 흑색이다.	6
합 계		100

(2) 육량 토착종(황색계, 흑색계, 백색계 등)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체중(Weight)	수컷의 체중은 3~5kg이고 암컷은 3.6kg정도가 표준이다.	4
2.균형(Symmetry) 및 상태(Condition)	대표적인 육용계 품종으로 체형이 크고 강직하게 보이나 성질이 보편적으로 온순하고 민속성인 품종이다.	8

3.뿔(Comb)	흑색계나 황색계의 뿔은 밝은 적색을 띠고 있고 작고 단단한 단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	6
4.부리(Beak)-모양, 색깔	부리는 약간 구부러져 있고 중간정도의 길이이며 고유의 색깔이다.	4
5.머리(Head)-모양, 색깔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띠고 있다.	4
6.눈(Eyes)-모양, 색깔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띠고 있다.	4
7.고기수염(Wattles)-모양	고기수염은 작고 부드러우며 둥글게 늘어져 있다.	2
8.귀뿔(Ear Lobes)-모양, 색깔	귀뿔 모양은 타원형이며 색깔은 흰색 또는 갈색이다.	4
9.목(Neck)-모양, 색깔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띠고 있다.	10
10.날개(Wings)-모양, 색깔	날개는 짧고 날개 윗 색깔은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띠고 있다.	10
11.등(Back)-모양, 색깔	등은 중간정도의 길이로 위쪽부위가 약간 올라와 있고 뒤쪽으로 경사져 있다.	10
12.꼬리(Tail)-모양, 색깔	흑색계나 황색계의 꼬리는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색깔은 흑색이나 황색을 띠고 있다.	10
13.몸통(Body)-모양, 색깔	전반적으로 몸통은 다른 품종에 비하여 크며, 색깔은 흑색계는 흑색이고 황색계는 황색을 띠고 있다.	8
14.가슴(Breast)-모양, 색깔	가슴은 딱 벌어져 있고 위풍당당하다.	10
15.다리와 발가락(Legs and Toes)-모양, 색깔	정강이는 짧고 다리는 둥글고 근육질이며 발가락은 매우 길고 곧게 뻗어있다.	6
합 계		100

(3) 육질 토착종(갈색계, 백색계, 황반계 등)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1.체중(Weight)	수컷 체중은 3.5kg이고 암컷은 2.5kg정도가 표준이다.	4
2.균형(Symmetry) 및 상태(Condition)	대표적인 육질 전용 품종으로 성질이 보편적으로 운순하고 만족성인 품종이다.	8
3.뿔(Comb)	뿔은 밝은 적색을 띠고 있고 작고 단단한 단관 형태를 지니고 있다.	6
4.부리(Beak)-모양, 색깔	부리는 약간 구부러져 있고 중간정도의 길이이며 고유의 색깔이다.	4
5.머리(Head)-모양, 색깔	머리는 갈색계는 갈색이고 백색계는 백색, 황반계는 황반을 띠고 있다.	4
6.눈(Eyes)-모양, 색깔	눈은 중간 크기이고 색깔은 갈색을 띠고 있다.	4
7.고기수염(Wattles)-모양	고기수염은 작고 가늘고 둥글게 늘어져 있다.	2
8.귀뿔(Ear Lobes)-모양, 색깔	귀뿔은 타원형이며 색깔은 갈색이다.	4
9.목(Neck)-모양, 색깔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있고, 색깔은 갈색, 백색, 또는 황반을 띠고 있다.	10
10.날개(Wings)-모양, 색깔	날개는 짧은 편이고 색깔은 갈색, 백색, 또는 황반을 띠고 있다.	10
11.등(Back)-모양, 색깔	등은 중간정도의 길이이고 뒤쪽으로 경사져있다.	10
12.꼬리(Tail)-모양, 색깔	꼬리는 수평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 색깔은 갈색, 백색, 또는 황반을 띠고 있다.	10
13.몸통(Body)-모양, 색깔	몸통은 육량형과 산란형 중간정도이며, 색깔은 갈색, 백색, 또는 황반을 띠고 있다.	8
14.가슴(Breast)-모양, 색깔	약간 벌어져 있으며, 색깔은 갈색, 백색, 또는 황반을 띠고 있다.	10
15.다리와 발가락(Legs and Toes)-모양, 색깔	발가락은 4개로 직립되어 있고, 색깔은 노랑색이다.	6
합계		100

4. 토종오리

- 가. 심사시기 : 20주령 이내
- 나. 심사기준 :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 다. 외모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점
체중(Weight)	(소형종) 1.5kg~2.0kg정도 (대형종) 2.5kg~3.5kg정도	4
균형(Symmetry) 및 상태(Condition)	체형은 작은편이고 몸매가 타원형으로 매끈하며 머리, 부리 등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6
부리(Beak) (모양 4, 색깔 4)	부리는 넓적하고 중간정도의 길이를 가지며 색깔은 황색, 흑색 및 청동색을 띠고 있다.	8
머리(Head) (모양 2, 색깔 8)	머리는 약간 작은 편이며 수컷머리는 번식기에 청동 색을 띠고 비 번식계절에는 흑색과 갈색을 띠며, 암컷의 머리는 흑색 및 갈색을 띤다.	10
눈(Eyes) (모양 2, 색깔 6)	눈은 둥글고 색깔은 흑색 및 갈색을 띠고 있다.	8
목(Neck) (모양 4, 색깔 4)	목은 두부에서 등쪽으로 적당히 이행되어 있고 솟오리에서 머리와 목의 경계지점에 흰색의 띠가 있으며 목의 색깔은 갈색이다.	8
날개(Wings) (모양 4, 색깔 6)	날개의 깃털에서 바깥쪽은 갈색이나 안쪽은 백색을 띄우며 주익우에 청색 줄무늬와 그 양쪽가장자리에 백색의 선을 선명하게 가진 경우가 많다.	10
등(Back) (모양 5, 색깔 5)	등은 목에서 꼬리 부분으로 잘 이행되어 있고 색깔은 갈색 및 흑색을 띠고 있다.	10
꼬리(Tail) (모양 5, 색깔 5)	꼬리의 색깔은 대체로 흑색 및 갈색을 띄우며 꼬리 끝은 말려 올라가 있다.	10
몸통(Body) (모양 4, 색깔 4)	몸통은 매끈하고 둥근 형태이고 피부는 밝은 회색이나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다.	8
가슴(Breast) (모양 6, 색깔 4)	가슴은 딱 벌어져 있고 타원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흑갈색 및 회백색을 띠고 있다.	10
다리와 발가락(Legs and Toes) (모양 3, 색깔 3)	발가락은 4개로 황색이며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다.	6
귀	귀는 눈 옆에 있으며 외견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2
합 계		100

5. 토종말

가. 심사시기 : 생후 2개월령 이전

나. 심사기준

(1) 외모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 점	
		압	수
1. 일반외모, 체형, 체격, 품위, 자질, 성징	엉덩이 높이가 몸높이보다 높거나 같으며, 가슴둘레는 넓고 발목둘레는 굵으며 몸폭이 좁고, 팔다리길이 비율이 크며, 체형은 소형이면서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	9	11
	체격은 왜소하며 몸통중간부분은 약간 길고 체위 각 부위의 균형이 양호하며, 외모는 비교적 경쾌할 것	7	8
	엉덩이길이, 어깨길이, 상완길이, 대퇴길이가 비교적 작아서 날렵하며 목직한 체형을 많이 혼합한 독특한 체형을 한 것	7	8
	암수 각기 고유의 성징을 구비하면서 성질은 온순하며 영리하고, 운동에 끈기를 보이고 동작은 침착하며 체질과 지구력이 강인할 것	7	8
	소 계	30	35
2. 머리, 목	머리형태는 곧은 머리에 가깝고 체격에 비해 머리가 크고 눈은 둥글 것	5	5
	목은 굵고 수평한 목에 가까운 것	5	5
	갈기 털은 다른 종의 말보다 많고 윤택할 것	5	5
	소 계	15	15
3. 잔중구, 어깨, 등, 배, 허리	기갑은 약간 길면서 높은 형태를 이루며, 어깨는 적당한 경사와 알맞은 길이에 부착이 좋고 상완 및 어깨의 부착상태가 양호하면서 여유가 있는 것	8	8
	등의 모양은 짧고 넓고 곧으며, 적당한 경사를 이룰 것	6	6
	배는 짧고 굵으며 허리의 형태는 낮은 허리를 이룰 것	6	6
	소 계	20	20
	엉덩이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궁둥이는 돌출되지 않을 것	7	6

4. 후구, 엉덩이, 꼬리, 유기, 생식기	꼬리털은 굵고 길이는 적당하며 힘이 있고 부착이 좋으며, 항문은 잘 긴장 될 것	7	6
	암말은 유방이 균등하게 발달하고 유연하며 유두의 위치 및 그 형태가 좋고, 음부는 발육이 정상이고, 숫말은 고환이 정상이고 표피가 늘어나있지 않은 것	9	6
소 계		23	18
5. 지체, 보양	다리는 짧고 굵으며 발굽은 굵고 견고할 것	6	6
	걸음걸이는 바르고 탄력이 있으며 좌우요동이 적고 발디딤이 확실할 것	6	6
소 계		12	12
계		100	100

※ 실격조건

- ① 부당한 수단으로 실격조건을 은폐시킨 것
- ② 다음의 유전적 불량형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 1) 동요병 (Wobbler) 2) 백내장 (Cataract)
 - 3) 앵무새입증 (Parrot Mouth) 4) 천명증 (Laryngeal Hemiplegia)
 - 5) 단고환 (Monorchidism) 6) 잠복고환 (Cryptorchidism)

(2) 체형기준(체고대비 비율)

(단위 : %)

구분		24월령	30월령	36월령	42월령	48월령	54월령	60월령
체 고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배 고	♀	97.6	97.4	97.2	97.1	97.1	97.0	97.0
	♂	97.8	97.5	97.3	97.1	97.0	96.9	96.9
고 고	♀	103.1	103.2	103.1	103.1	101.7	101.6	101.5
	♂	102.3	101.8	101.3	101.1	100.9	100.8	100.7
흉 위	♀	115.6	117.6	119.0	120.1	121.0	121.5	121.9
	♂	115.1	116.2	117.0	117.4	117.8	118.0	118.3
흉 심	♀	46.1	46.9	47.3	47.6	47.9	47.9	48.0
	♂	46.2	46.7	47.0	47.1	47.2	47.3	47.3
흉 폭	♀	21.9	22.7	23.3	23.8	24.3	24.6	24.9
	♂	21.9	22.5	23.0	23.5	23.8	24.2	24.5
요 폭	♀	32.8	33.5	33.9	34.2	34.4	34.5	34.6
	♂	32.3	32.8	33.2	33.4	33.6	33.6	33.7
고 폭	♀	29.7	30.5	31.1	31.6	32.0	32.2	32.4
	♂	29.5	30.2	30.7	31.0	31.3	31.6	31.7
체 장	♀	102.5	102.8	102.9	102.9	103.0	102.9	102.9
	♂	101.7	101.3	100.9	100.6	100.4	100.2	100.2
두 장	♀	38.9	39.0	39.1	39.1	39.2	39.2	39.2
	♂	39.2	39.3	39.3	39.3	39.3	39.3	39.3
전관위	♀	13.0	13.0	12.9	13.0	13.0	12.9	12.9
	♂	13.4	13.4	13.4	13.4	13.4	13.4	13.4
고 장	♀	32.2	32.2	32.2	32.3	32.3	32.2	32.2
	♂	32.1	31.9	31.6	31.5	31.3	31.3	31.2

- ※ ① 위 월령 미해당 마필은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월령별 체형비율에 따른다.
 ② 제주마 체형기준은 5년 마다 갱신을 원칙으로 한다.

(3) 혈통등록에 따른 친자감별 : 국제동물유전학회 또는 국제혈통서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자동분석기에 의한 말의 친자분석 Kit로 친자감별을 한다.

6. 토종말

가. 심사시기 : 성충 5일령 기준

나. 심사기준

- (1) 뒷날개의 시맥 : 중앙맥과 윗맥의 가지맥이 만난 곳에서 날개끝 쪽으로 나가는 맥이 2개
- (2) 여왕벌, 일벌의 색채 : 흑색
- (3) 혀 길이 : 5.3mm
- (4) 체형

체 장(mm)			체 중(g)		
여왕벌	일 벌	수 벌	여왕벌	일 벌	수 벌
13~17	10~13	12~13	0.21	0.068	0.124

- (5) 선풍방향 : 머리가 출입구의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6.3. 사후관리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점검함.
 - 고시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함.

6.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토종돼지란 무엇인가(농업인신문, 2020.09.25.)
 - 최근 몇 년 사이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며 우리나라 흑돼지(재래돼지) 사례에 주목함.
 - 돼지에서 품종 개발과정을 보면 시장성을 갖기 위해 여러 품종과 교잡하고 오랜 시간 별도 관리 및 유지하여 발현된 특징이 고정된 돼지를 하나의 품종으로 정의해옴.
 - 영국의 요크셔 품종이 대표적인 예로, 영국 요크셔 주의 재래종과 타 품종간 교배로 형질이 고정된 요크셔 품종이 현재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체계의 필수 품종이 됨.
 - 이렇듯, 국내에서도 국가적 관리기반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특색에 맞는 토종품종

을 꾸준히 개량해야 하며, 재래종을 순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토종돼지 인정범위를 개선하여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을 주장.

6.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인정 심사 중 공장심사의 경우, HACCP의 시설기준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HACCP 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해 주거나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방안 도입 필요.
- 토종가축 인정에 대한 「축산법」의 행정규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토종가축 인증>은 우리 고유의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 따라서 **현행 내용을 대부분 존속하길 권장함.**
 - 현재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와 <처리 절차>는 이미 충분히 간단하여 별도 조정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토종돼지와 토종말의 경우 품목 제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에서 신청하는 토종돼지 인정 건수는 2019년 최초로 재래돼지 복원에 성공한 1개 농가가 전부인 것을 감안할 때, 운영 10년차 임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업계에서도 재래돼지 복원보다 개량된 새로운 고정 품종을 원하고 있음.
 - 토종말의 경우에도 종축으로 등록된 제주마를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것 외에 사실상 토종가축 인정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 결과 통보 기간이 현재 21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수요자인 농업인들은 이보다 단축시켜줄 것을 요청함.
 - 심사 결과의 통보기간 단축은 평가기간의 행정수요 및 인력 등과 연계된 문제로 일괄적으로 단축하기는 어려움. 다만,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임.

7. 인삼류 검사

7.1. 개요 및 관련 법령

- 인삼류 검사는 「인삼산업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삼류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삼류 검사>는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인삼 생산 농가 및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이 되고 있음.

■ 「인삼산업법」

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 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 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3.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4.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에 검사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2. 인증 절차 및 기준

- 인삼류 검사는 인삼류 검사기관인 한국인삼검사소와 33개 자체 검사업체에서 시행함. 먼저, 인삼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기관은 서류 검토, 기술 검토를 거쳐 검사를 시행함.
 - 한국인삼검사소는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고시에 따른 지정기관임.
 - 자체검사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삼산업법」 제17조의2조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함.
 - 검사기관은 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안전성검사, 관능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게 됨.
 - 안전성 검사는 10일이 소요되고, 관능검사는 1일이 소요됨.

그림 7-1. 인삼류 검사 절차



표 7-1. 인삼류 검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비고
관능검사	해당 물품가격의 10/1,000 이하	1.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농약잔류검사는 여러 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성분으로 한다.
이화학검사	7,500원 이하/시료 1점	
미생물검사	10,000원 이하/시료 1점	
벤조피렌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중금속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농약잔류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1성분	
표백제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조사포닌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진세노사이드검사	66,000원 이하/시료 1점	

- 인삼류 검사는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23호, 2020.12.23.일부개정)에 근거하여 실시됨.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3. 3. 16.>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 1) 수분 : 15.0% 이하일 것
-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 중 중한 기준에 의할 것
- 4) 회분 : 5% 이하(미삼류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것
- 5) 농약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의할 것
- 6) 이물 : 인삼류는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제거가 가능한 이물과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 7)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8) 세균수: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
- 9)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
- 10)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것
- 11) 인삼성분
 - 가)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의 함량(%)

본삼류	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	세미류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나) 묽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 : 18.0% 이상

12) 진세노사이드 함량

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 Rg1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b1의 함량이 0.20% 이상일 것

나) 흑삼: Rg3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k1 및 Rg5의 함량의 합이 0.20% 이상일 것

나. 개별검사기준

1) 연근검사

가) 검사항목

삼종	검사항목
홍삼·태극삼 및 흑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4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백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2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2) 품질검사 (생략)

7.3. 사후관리

- 인삼산업법 제17조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에 따라 인삼류 품질관리를 위해 확인검사를 할 수 있음.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23호) 제7조에 따라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할 수 있음.
 -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을 수거, 폐기, 재검사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제품을 압류할 수 있음.

- 다만, 인삼산업법 제17조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음.

7.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인삼류 연근 표시 자율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36)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 심사 중임.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인삼류 제조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연근표시제를 자율사항으로 하도록 제안함.
 - 또한 인삼류 검사에서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연근검사나 외형검사는 선택검사로 하도록 제안함. 이 밖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류의 경우에는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를 제안함.

7.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검토 결과, 해당 인삼류 검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현행 내용을 상당 부분 존속하길 권장함.**
- 다만,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과 수입부담금의 납입 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인삼류 검사 절차에서 행정규제의 객체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해당 검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간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한, 최근 물가상승 및 납입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수입부담금 납입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입 가능 금액을 현행 건당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확대를 검토하길 제안함.

표 7-2. 인삼류 검사 규제개선사항

	현행	제안
제27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입부담금 의 납입 등)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 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 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매 등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 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 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금액이 건당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8.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8.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은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제98조,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 125조부터 제128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2-6호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보호에 이바지.
 - 농산물, 농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농산물의 검사)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1.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품종·성분 및 유해물질 등

2.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

3.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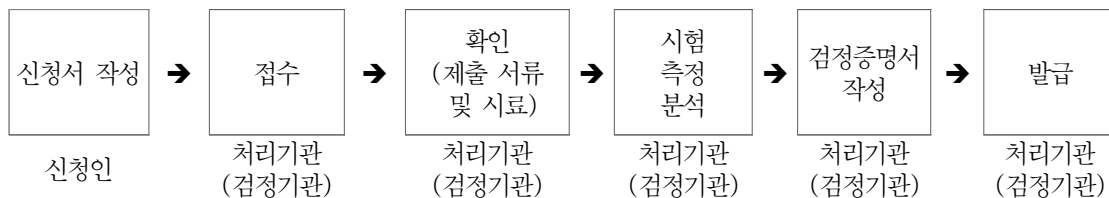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검정을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신청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2. 인증 절차 및 기준

- 신청인이 검정기관에 검정 접수 신청을 하면 검정기관에서 제출서류 및 시료를 확인하고 시험측정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정 증명서 작성하여 발급함.

그림 8-1.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 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절차



-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22-6호에 따름.

■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9조 및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및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란 농산물 등의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정 또는 감정하여 등급 또는 적·부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정”이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농지·용수·자재(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측정·시험·분석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 “감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이화학적 방법 등을 통하여 가치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측정”이란 농산물 등의 품위 등을 일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어떤 성질을 수량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험”이란 일정기간의 실험을 통하여 농산물 등의 변화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바. “분석”이란 농산물 등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무기성분 및 잔류농약, 유해중금속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농산물) 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농산물 및 「검사대상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로 한다.

제4조(검정항목) 이 규정에 의한 검정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른다.
 제2장 농산물 검사 절차 및 방법

제5조(검사장소 등) 검사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수검자가 신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장소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검사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은 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되 품목별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곡, 과실·채소·특용작물·서류(薯類)
 가. 품목별, 연산별 1건의 문서로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경신청은 기상여건 변동 및 특이상황 발생 시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검사 전일까지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나. 규칙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 전에 검사장소별 수매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곡
 가. 곡종별, 연산별, 단량별 1건으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다만, 수검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 착수 전에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서 포장단위당 무게 미만의 잔량이 발생할 경우 쌀·현미·보리쌀에 한하여 kg단위로 검사신청할 수 있다.

제7조(수매검사 일정 조정) 제6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사신청자가 제출하는 검사장소별 수매검사 일정(계획)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장·사무소장 및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사전지도)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농가와 가공공장 등에 대하여 검사규격, 검사방법, 선별요령 및 검사 관련사항을 사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검사기준) 검사기준은 규칙 제94조에 따른다. 다만, 곡류 중 물벼·물보리 검사 시에는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중 “품위” 항목에서 “수분”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검사방법) 제6조에 따라 신청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는 곡류와 과실·채소·특용작물·서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곡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2, 과실·채소·특용작물·서류 검사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견본계측 및 품위검사는 항목별로 실시하되 곡류의 곡종별 품위검사 순위는 별표 4와 같다.
3. 농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의 축분 및 체별방법, 측정·시험·분석방법은 제28조의 검정방법에 따른다.

제11조(검사증명)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84조 및 규칙 제107조에 따라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표시인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농산물 검사꼬리표 및 검사표시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 품목별로 별도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이의신청)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곡류 산물검사의 중량과 수분계측 결과에 대하여는 생산자 및 인수자의 이의 여부를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신청) 농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는 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희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희망일 3일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제출(Fax 신청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계약규격(구매계약서의 품위검사방법 등),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선적도(Stowage plan)사본, 수출신용장(L/C)사본, 수출허가서(E/L)사본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받아 검사에 참고하도록 한다.
2. 수입농산물의 수검자는 선박단위로 신청하되, 동일 선박에 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수입업자가 각각 다를 때에는 종류별, 선하증권(B/L)별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장이 어려운 상태로 적재되어 입항지 검사에 의해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급조절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반입지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항구 확장 등으로 접안 또는 하역시설의 일부가 관할 구역을 달리할 경우 주 항구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동일선박이 2개 이상의 항구에 하역될 경우 검사신청은 하역계획서를 첨부하여 최초 입항지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하역 계획 및 하역 항구지 별 배정물량을 파악하여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장소)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요구하는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하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검사를 할 경우 「식물방역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장소를 검사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검사장의 채광상태가 양호하고 검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면적
2. 검사품의 선도유지 및 동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3. 저울, 검사대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용 기구

제15조(검사 사전대비)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
 - 가. 수검자의 요구사항
중량, 포장, 품위검사 항목 및 규격, 검사장소, 검사꼬리표 색깔 등 검사 전반에 대한 수검자의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식물검역 및 합동검사를 위한 조치
수검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과 합동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파악하여

관할지 또는 수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합동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 1) 검사신청서 접수일시
- 2) 수검자 주소, 성명
- 3) 수입자 주소, 성명
- 4) 품목명
- 5) 포장재, 단량 및 수량
- 6) 수송방법(선박 또는 항공 등)
- 7) 수출국의 도착지
- 8) 검사희망 일시
- 9) 검사장소

다. 수검자는 검사대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되 가급적 관할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사전지도를 받도록 한다.

- 1) 품위 및 크기선별
- 2) 중량 및 표시
- 3) 포장방법

라. 검사기관의 장은 수출농산물 검사경험이 있거나 농산물 검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사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입농산물

가. 수검자는 검사기관의 장이 인력배치 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예정 상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농산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거나 선박에 적재된 농산물이 창고에 반입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잔량 수합품(이하 “사고품”이라 한다) 흔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농산물의 종류, 명표 등이 구매계약 내용과 합당한지의 여부를 검사 착수 전에 파악하여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방법) 검사는 수출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수출농산물은 검사방법과 검사부의 정리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규격과 제10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입농산물의 검사는 별표 6에 따라 실시하되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이 계약규격이나 제출서류에 명기되지 않았을 때는 별표 7에서 규정한 수입 농산물 품위검사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제17조(검사증명) 검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검사신청 건별로 규칙 제107조에 따라 검사신청인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2에 따라 발급하고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하며, 영문 검사증명서는 별표 8과 같이 작성한다.
2. 수입농산물은 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3의 수입검사 증명서를 수검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품위검사 내역을 첨부)

제18조(검사 이의신청 등) 검사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85조 및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검사대상 물량을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콩나물 콩, 녹두(나물용)는 발아율 검사에 한하여 개별 컨테이너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보존용 시료를 대상으로 재검사하고, 보존용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품목은 다시 표본을 추출 재검사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 신청자가 입회를 원할 경우 재검사 과정에 입회시킬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사에 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정을 하지 않고 농관원 시험연구소 등 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검정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 수검자는 검사에 필요한 운반·계량·표본추출·해장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수검자가 특이 규격 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검사 기자재 및 장비

제공을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통보) 검사기관의 장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통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농산물 검사결과에 실적이 있는 분기에 한하여 다음 분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통보고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농산물 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선박의 입항상황 파악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 선박별 검사결과를 검사완료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 사고품 발생 시 발생상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및 본원에 보고하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수입농산물검사 시 동일 선박을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사한 경우 2차 이후 입항한 항구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검사종료 후 최초 입항지를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FAX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수입농산물검사 착항지(반입지 포함)를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은 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검사실적을 다음 분기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10일까지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적용범위) 농산물 검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와 물품(이하 “검사기기”라 한다)은 제23조의 검사기기 취급 및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표시인은 「검사표시인 취급 및 관리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에 따라 관리한다.

제22조(검사기기의 종류) 검사기기의 종류는 수분측정 보조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분측정기, 검사용 표준체, 검사용 색대를 말한다.

1. 수분측정기
형식: 적외선식, 전기저항식, 고주파 정전용량식 등
2. 검사용 표준체
가. 종류
1) 그물체(금속망 체, KSA 5101-1)
2) 판체: 등근논의 판체(금속판 체, KSA 5101-2), 세로논의 판체(縱目篩), 세로줄의 판체(縱線篩, 줄체)
나. 규격과 형상: 별표 9 참고
3. 검사용 색대
가. 종류: 조곡용, 정곡용
나. 규격과 형상: 별표 10 참고

제23조(검사기기의 취급 및 관리방법) 검사 기기의 취급 및 관리요령, 교정 및 표시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24조(검사기기의 폐기) 노후 또는 파손과 부속품 조달 불가능 등으로 인한 사용 불능품(수리 가능품 중 경제성이 월등히 떨어지는 기기 포함)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5조(검정기관) ① 농산물 등의 검정은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원·사무소(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와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은 지정받은 검정항목에 한하여 검정할 수 있다.

- ② 검정항목별 검정기관은 별표 12와 같다.
- ③ 검정업무의 관할구역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관원 시험연구소와 지정검정기관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 ④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업무 등에 기술지도가 필요하거나 자체시설 및 장비만으로 검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기술지도 요구 또는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검정신청)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별표 12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39조에 따른 검정수수료 또는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대장’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입력·관리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증명서의 발급) ①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한 때에는 법 제98조제1항 및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통보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증명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검정방법) 규칙 제128조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검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발아율 시험 시 허용오차는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검정기관 및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축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 공시품은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의 품위가 변화되지 않도록 하여 별표 12에서 정하는 보관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상온보관이 어려운 시료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 기한) 농관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3. 사후관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농산가공품의 생산자·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1. 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2. 해당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
- ② 해당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농수산물·농산가공품 중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 사실을 해당 생산자등에게도 동시에 알려야 한다.
1. 검정신청서 사본 및 검정증명서 사본
 2. 조치방법 등에 관한 지정검정기관의 의견

제128조의3(검정결과외의 공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에 12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1.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또는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농수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검정결과” 라는 내용의 표제
2. 검정결과
3. 공개이유
4. 공개기간

8.4.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최근 5년간 검정실적이 증가 중이며, 인증심사 및 농산물 검사를 위한 검정 수요도 증가 추세임.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검사 수요뿐만 아니라 검사실적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제도를 폐지할 경우 농산물 정부수매 등 농산물 수급관리, 국영무역을 통한 국내외 거래(일반 수출입 포함)에 차질 불가피하며, 먹거리 안전성 확보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제도의 존치 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 적절한 품위, 품종, 성분, 유해물질 검정을 통하여 품위별 거래단가 기준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속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 및 농산물 생산·유통·판매자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은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속이 필요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4.1.22)으로 검정기관 지정신청 기준 완화 및 관련 하위 법령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제안을 하지 않음.
 - 개선내용: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검정항목 수 축소: (현행) 2개 항목(잔류농약, 항생물질)→(개선) 1개 항목(잔류농약)

9.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9.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부터 제27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4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에 근거하고 있음.
- **GAP 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 제고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 *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은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GAP 인증** 농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임.
 - 국민들이 고품질 안전 **GAP**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높기에 제도의 존속이 필요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약칭: 농수산물품질법)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지정결과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한 경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3.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8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2. 인증 절차 및 기준

- 신청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GAP인증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일정을 통보한 후 심사원은 접수 후 40일 이내 심사를 실시함. 심사 결과를 GAP인증기관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면 지정서 발급, 부적합하면 부적합 통보를 신청자에게 알림. GAP인증기관과 농관원에서 관리시설 지도 및 감독 등 사후관리를 함.

그림 9-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인증 절차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4.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삭제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 및 지사의 소재지·전화번호
3. 수확 후 관리 품목
4.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⑦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적용한다.

⑧ 우수관리시설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우수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나. 인력

-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갖추는 것
-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과 자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법령, 농산물우수관리시설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 하되, 학사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 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라)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다만,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보유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는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시설

- 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 시설

시설기준		비고
시설물	가) 곡물의 수확 후 처리시설 및 완제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는 제품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축산폐수·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물 및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건조저장시설	가) 건조 및 저장시설은 잔곡(殘穀)이 발생하지 않거나, 잔곡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저장시설에는 통풍, 냉각 등 곡온(穀溫: 곡식의 온도)을 낮출 수 있는 장치 및 곡온을 측정할 수 있는 온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곡온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저장시설은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저장시설 내에는 농약 등 곡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곡물과 같이 보관되지 않아야 한다.	
작업장	가) 원료 곡물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작업장은 반입, 건조 및 저장 시설은 물론 부산물실과 분리(벽·층 등으로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거나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되어야 한다.	
	나) 쌀 가공실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완제품 보관부, 포장재 보관부가 각각 격리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바닥은 하중과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라) 내벽과 천장의 자재는 곡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마) 출입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고, 완제품 보관부 등의 지게차 출입이 잦은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외문은 견고하고 밀폐가 가능해야 하며 내문은 신속하게 여닫을 수 있고 분진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바)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식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사) 집진(集塵)을 위한 외부 공기 도입구가 설치되어야 하며, 외부 공기 도입구에는 먼지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터를 설치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 채광 및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설비는 파손이나 이물질 낙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수집되어야 하며, 구획된 목적과 다르게 작업장 내에 부산물, 완제품 및 포장재 등이 방치되거나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차) 작업장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흡인식 청소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가	가)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에서 도정된 곡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공 설 비	스 강(鋼) 등과 같이 매끄럽고 내부식성(耐腐蝕性)이어야 하며, 구멍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나) 가공설비에는 쥐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침입방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각 단위기계, 이송설비 및 저장용기는 잔곡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고 청소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라) 곡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 및 다른 곡물의 낱알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한 선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집진 설비 및 부산 물실	가) 분진 발생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설비 등은 작업장과 분리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나) 반입, 건조저장 및 가공설비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분말 등의 제거를 위한 집진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하며, 집진설비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다) 걸거실·속거실 및 그 밖의 부산물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수 처 리 설 비	가) 곡물의 세척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설비, 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거나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나) 곡물에 사용되는 용수가 지하수일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용수저장용기는 밀폐가 되는 덮개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위 생 관 리	가)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손 세척 및 건조 설비(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한다)을 갖춰야 한다.	
	나) 작업장 종사자를 위한 위생복장을 갖추어야 하고,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청소 설비 및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밖 의 시 설	가) 폐기물처리설비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관 리 유 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작업공정도, 기계설비 배치도, 점검기준 및 관리일지(작업장, 기계설비, 저장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확 후 관리 품목
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방법
다. 수확 후 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마.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농산물우수관리시설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3. 사후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우수관리시설 조사·점검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 조사·점검: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점검 실시
2. 수시 조사·점검: 특정업체(온라인, 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 조사·점검: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점검

②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조사·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점검 시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의 20% 이상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이 조에서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지원장을 의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9.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 보도 포함)

○ GAP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 완화(농축유통신문, 2024. 04. 13.)

- 정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 분야 인력채용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신설 개보수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 개정 추진
- 학위 취득과 관련된 인력기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학위취득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력 기준에 포함기로 함.
-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이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세척농산물이 아니면서 위생청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돌출부위(H빔 등)의 노출이 가능토록 개정함.
- 우리관리시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취수원의 20미터 이내에 오염원이 있어도 취수원이 오염될 영향이 없는 위치에 있다면 지정기준 부합으로 개정.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해 그 적용 차수의 산정방법 규정
- 우수관리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행정편의를 높임.

9.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불필요함.

- 시설지정 요건 개선 제안
 - 현행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의 경우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식약처 등에서는 시설인증을 받아도 완전한 안전관리가 되지 못하는 불완전한 농산물 시설관리인증이라는 농민(협회)의 의견이 있었음.
 - 그러나, 이미 「우수관리기준」에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제안 없이 현행 내용을 존속하기를 권함.

10.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10.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은 199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조, 제7조, 동법 시행규칙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19-2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근거함.
-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시행됨.¹⁾
 -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 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됨.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997), FAO(국제식량농업기구, 2003)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함.
- 농산물우수관리 제도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GAP 인증 농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임.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그림 10-1. GAP인증
마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2. 인증 절차 및 기준

- 농업인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함. 그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인증 적합, 부적합을 구분하여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기관에서는 인증농가를 사후관리 함.

그림 10-2. GAP인증 인증 절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고시 제2019년-2호에 따름.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 8의2. “최종 판매업체”라 함은 인증 농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9.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의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1. 미곡류: 쌀, 찰쌀, 현미(조곡 포함)
2. 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조곡 포함)
3.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
4. 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울무 등
5. 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
6.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
7. 채소류: 수박·오이·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양배추·상추 등 엽채류, 무·당근·연근 등 근채류, 고추·양파·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피망·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취나물·두릅 등 산채류
8. 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유채,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

9.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

10. 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

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

③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의2(인증신청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④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 집단 단위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www.g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중 토양중금속, 수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 중금속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심사결과보고) 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

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2. 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제10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증기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과정에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인증구성원 또는 재배필지가 추가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갱신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 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③ 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
- ④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제13조(표시사항) ① 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② 규칙 별표1 제3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표시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1. 생산과정 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 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설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발급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 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 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 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 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
 - 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 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 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 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 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 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
 - 6. 농약병, 페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
 - 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증표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항목을 위반한 경우 수정·보완 등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 기간 내에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 사항이 컨설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전문가가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처분결과를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본교육 등)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에 지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GAP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3. 사후관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받은 농가 사후관리를 위해 생산과정 등 조사, 유통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함
 - 생산과정 등 조사는 연 1회 이상이며, 조사 기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실시함.
 - 유통판매과정 조사는 연 2회 이상이며, 조사 기관은 농관원에서 실시함.
- 위반 행위별 표시정리, 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처분

10.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 보도 포함)

- 현행 인증조건을 갖추면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증기관 난립으로 제도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증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 GAP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안전관리제도로, 수출농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동등성인정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 필요 주장.
- 대체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를 주장.

10.5. 규제 개선 내용 제안(업계 의견 포함)

- GAP제도는 HACCP 원리에 기초한 합리적인 농산물안전관리제도임. 따라서 GAP 활성화를 위해 인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실화를 유지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식품의 HACCP제도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년 정기관리를 받고 있는 반면, GAP는 2년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더불어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방침('24.2.27)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예정이므로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제안은 하지 않음.

11.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1.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임.
-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젓소, 한육우,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8-20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근거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2. 인증 절차 및 기준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



그림 11-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절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위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1-1, 별표 1-2, 별표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제5조(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출입·검사 등) ① 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3.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5.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6.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 ② 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그림 1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마크

11.3. 사후관리

-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판매장은 연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을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음.

■ 「동물보호법」

- 제6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4.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언론보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등장 임박.....정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돼지와사람, 2024. 02. 06.)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 도입.(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별표 9의7), 도축장 및 운송차량 지정절차(별표9의6) 등도 신설,

11.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임.
 - 국제기구의 동물복지정책 강화, 한-EU FTA, EU-칠레 FTA 등 국제협상에서 동물복지 논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도축·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복지 기준을 제정, 동물복지 기준 지속 개정
 - 우리나라는 사육단계에서 2012년 산란계 농장에 최초 도입 이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염소, 2016년 오리 농장으로 확대
 - 우리나라 동물복지인증 농장수는 2012년 26개에서 2020년(11월 12일 기준) 298개로 많이 증가하였지만, 산란계를 제외한 다른 축종의 인증 농장 비율은 낮은 수준

- (문제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별표6)에 근거,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이어야 함.
 - 그러나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의 산란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은 시설형태별로 ‘케이지’와 ‘평사’만 제시되고 있으며, ‘다단구조물’에 대한 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 산란계사 다단구조물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형태이나,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평사 농장의 시설 기준을 적용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자체가 거부되는 문제 발생
 - 다단구조물은 동물복지 인증 대상 사육 형태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 세부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산란계 다단구조물 면적 기준을 제시

- 다단구조물 면적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제2016-100호)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단구조물 면적 기준 적용
 - 다단구조물을 고려한 면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동물복지 인증에 부합하는 면적 기준으로 설정이 필요
- 다만, 위에서 제시한 규제 완화 내용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설이나 면적 기준 등은 산업동물로써의 가치를 다루는 축산부문과의 충분한 협의 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12/13. 친환경농축산물인증(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포함)

12/13.1. 개요 및 관련 법령

-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이며, 동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2023-3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근거하고 있음.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13.2. 인증 절차 및 기준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인증심사접수를 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계획을 통보하고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농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재배방법,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기준 적합하면 인증서 교부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사유를 통보함.



그림 12-1. 친환경농축산물인증(유기가공식품인증) 인증 절차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절차와 기준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재배포장”이란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 나.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 관행적인 농업 형태를 말한다.
- 다. “화학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중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라.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제조된 농약을 말한다.
- 마. “돌려짓기(윤작)”란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않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으로 조합·배열하여 차례로 심는 것을 말한다.
- 바.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사. “유기사료”란 제5호에 따른 비식용유기 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맞게 제조·가공 또는 취급된 사료를 말한다.
- 아.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자. “사육장”이란 축사시설, 방목 장소 등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차.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 카.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 타.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유통·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 파. “식물공장”(Vertical Farm)이란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공간에서 빛(LED, 형광등), 온도, 수분 및 양분 등을 인공적으로 투입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토양비옥도의 유지, 생물다양성의 증진, 천적서식지의 제공, 자연의 순환 등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할 것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3)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4)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과정명</th> <th>친환경농업 기본교육</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주기</td> <td>2년마다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body>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재배포장, 재배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재배지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오염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작물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轉換期間: 최소 재배기간) 이상을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할 것								

	<p>3)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산물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p> <p>4) 증자는 최소한 1세대 이상 다목의 재배방법에 따라 재배된 것을 사용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증자는 사용하지 않을 것</p> <p>5) 인근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의 농약 흘날림, 관개·배수 등 농업용수나 그 밖의 농업자재 등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p>
다. 재배 방법	<p>1) 화학비료,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p> <p>2)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를 실시할 것</p> <p>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완전히 부속하여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p> <p>4) 병해충 및 잡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관리할 것</p>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p>1)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의 수확·저장·포장·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p> <p>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이어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01mg/kg 이하일 것</p> <p>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p> <p>4)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p> <p>5)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p>
마. 그 밖의 사항	<p>1)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은 수분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사용하지 않을 것</p> <p>2)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이 아닐 것</p> <p>3)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 또는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하천·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것</p>

3. 유기축산물(제4호의 유기양봉 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p>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p> <p>2)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해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p> <p>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마다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사육 조건	<p>1) 사육장(방목지를 포함한다),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p> <p>2) 축사 및 방목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관리할 것</p> <p>3)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유기가축”이라 한다)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p> <p>4)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것</p> <p>5) 사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가축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할 것</p> <p>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 보관·공급 및 먹는 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p> <p>7)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p>																								
다. 자급 사료기반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유기적 방식으로 재배·생산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확보할 것																								
라. 가축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p>1) 가축은 사육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선택하고,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호르몬 처리 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p> <p>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하 “유기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가축, 젖을 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p>																								
마. 전환 기간	<p>유기농장이 아닌 농장이 유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할 것</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축의 종류</th> <th>생산물</th> <th>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우·육우</td> <td>식육</td> <td>입식 후 12개월</td> </tr> <tr> <td rowspan="2">젖소</td> <td>시유 (시판우유)</td> <td>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td> </tr> <tr> <td>면양·염소</td> <td>식육</td> <td>입식 후 5개월</td> </tr> <tr> <td rowspan="2">면양·염소</td> <td>시유 (시판우유)</td> <td>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td> </tr> <tr> <td>돼지</td> <td>식육</td> <td>입식 후 5개월</td> </tr> <tr> <td>육계</td> <td>식육</td> <td>입식 후 3주</td> </tr> <tr> <td>산란계</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body> </table>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면양·염소	식육	입식 후 5개월	면양·염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가축의 종류	생산물	전환기간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12개월																							
젖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면양·염소	식육	입식 후 5개월																						
면양·염소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table border="1"> <tr> <td>오리</td> <td>식육</td> <td>입식 후 6주</td> </tr> <tr> <td></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메추리</td> <td>알</td> <td>입식 후 3개월</td> </tr> <tr> <td>사슴</td> <td>식육</td> <td>입식 후 12개월</td> </tr> </table>	오리	식육	입식 후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12개월											
바. 사료 및 영양관리	<p>1) 유기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p> <p>2) 반추가축에게 담근먹이(사일리지)만을 공급하지 않으며, 비반추가축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생초나 건초 등의 거친 먹이)를 공급할 것</p> <p>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서 유래한 물질은 공급하지 않을 것</p> <p>4) 합성화학물 등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 공급하지 않을 것</p> <p>5)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p> <p>6)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등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p>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p>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에 동물용의 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p> <p>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별표 1 제1호나목5)에 따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조건을 준수하고 사용할 것</p> <p>3)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전환기간(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전환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말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사육한 후 출하할 것</p> <p>4) 가축의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를 붙이거나 꼬리, 이빨, 부리 또는 뿔을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허용할 수 있다.</p> <p>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p> <p>6) 3)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 또는 그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들 것</p>												
아.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p>1) 살아 있는 가축을 운송할 때에는 가축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해야 하고, 운송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p> <p>2) 가축의 도축 및 축산물의 저장·유통·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축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p> <p>3)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p> <p>4)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p> <p>5)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p>												
자. 가축분뇨의 처리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p>												
4. 유기양봉 산물·부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p>2) 꿀벌과 벌통의 관리는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p> <p>3) 벌통의 반경 3km 이내에는 유기적으로 재배되는 식물과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조성되어 꿀벌이 영양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p> <p>4) 벌통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 것</p> <p>5) 벌집은 유기적인 밀랍, 프로폴리스 및 식물성 기름 등 천연원료·재료를 소재로 한 제품만 사용할 것</p> <p>6)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22 631 1292 795">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마다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꿀벌의 선택, 번식방법 및 입식	꿀벌의 품종은 지역조건에 대한 적응력, 활동력 및 질병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다. 전환 기간	양봉의 산물·부산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말한다. 이하 “양봉의 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유기양봉 산물·부산물의 인증기준을 1년 이상 준수할 것								
라. 먹이 및 영양관리	꿀벌에게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먹이를 제공할 것								
마.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p>1) 양봉의 산물등을 수확하기 위해 벌통 내 꿀벌을 죽이거나 여왕벌의 날개를 자르지 않을 것</p> <p>2) 합성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화학합성물질로 제조된 기피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p> <p>3) 꿀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p> <p>4) 꿀벌의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물질을 사용할 것</p> <p>- 젖산, 옥살산, 초산, 개미산, 황, 자연산 에테르 기름[멘톨, 유칼립톨(eucalyptol), 캠퍼(camphor)], 바실루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증기 및 직사 화염</p> <p>5) 3) 및 4)의 규정에 따른 꿀벌의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조치 및 물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것</p> <p>6)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다시 인증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의 전환기간을 거칠 것</p>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p>1) 양봉의 산물등의 가공, 저장 및 포장에 사용되는 기구, 설비, 용기 등의 자재는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p> <p>2) 이온화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전, 병원체와 위생관리 등을 위해 양봉의 산물등에 사용하지 않을 것</p> <p>3) 가공방법은 기계적,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발효를 포함한다)인 방법으로 하고, 가공으로 인해 양봉의 산물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p> <p>4)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p> <p>5)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p> <p>6)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p>								

5. 유기농식품 · 비식용유기농식품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인증기준																				
<p>가. 일반</p>	<p>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 ·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p> <p>2) 사업자는 유기농식품 · 비식용유기농식품의 제조,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원료 · 재료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p> <p>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424 654 1291 815"> <thead> <tr> <th>과정명</th> <th>친환경농업 기본교육</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주기</td> <td>2년마다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body> </table> <p>4)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p>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p>나. 가공 원료 · 재료</p>	<p>1)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 재료(첨가물과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일 것</p> <p>2)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비유기 원료 · 재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유지원료의 함량과 비유기 원료 · 재료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p> <table border="1" data-bbox="424 1070 1358 1776"> <thead> <tr> <th rowspan="3">제품구분</th> <th rowspan="3">유지원료의 함량</th> <th colspan="3">비유기 원료 · 재료 사용조건</th> </tr> <tr> <th rowspan="2">유기농식품</th> <th colspan="2">비식용유기농식품</th> </tr> <tr> <th>양축용</th> <th>반려동물</th> </tr> </thead> <tbody> <tr> <td>유기로 표시하는 제품</td> <td>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퍼센트 이상</td> <td>식품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td> <td>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td> <td>사료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td> </tr> <tr> <td>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td> <td>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퍼센트 이상</td> <td>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td> <td>해당 없음</td> <td>사료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td> </tr> </tbody> </table> <p>3)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 또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p> <p>4) 가공원료 · 재료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가공 원료 · 재료에 대한 납품서 · 거래인증서 · 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p>	제품구분	유지원료의 함량	비유기 원료 · 재료 사용조건			유기농식품	비식용유기농식품		양축용	반려동물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사료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해당 없음	사료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제품구분	유지원료의 함량			비유기 원료 · 재료 사용조건																	
				유기농식품	비식용유기농식품																
		양축용	반려동물																		
유기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95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사료 원료(유지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유기 70퍼센트로 표시하는 제품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70퍼센트 이상	식품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	해당 없음	사료 원료 또는 별표 1 제1호나목1) · 2)에 따른 단미사료 · 보조사료 및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다. 가공 방법	모든 원료·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화학적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식품·유기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재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유기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바. 포장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포장과정에서 유기적 순수성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사용할 것
사. 유기원료·재료 및 가공식품·가공품의 수송 및 운반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고, 수송과정에서 원료·재료, 가공식품 또는 가공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 기록·문서화 및 접근보장	1)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취급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2)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 2)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6. 취급자(유기식품등을 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일반	<p>1)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p> <p>2)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과정명</td> <td>친환경농업 기본교육</td> </tr> <tr> <td>교육주기</td> <td>2년마다 1회</td> </tr> <tr> <td>교육시간</td> <td>2시간 이상</td> </tr> <tr> <td>교육기관</td> <td>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td> </tr> </table> <p>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p>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과정명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주기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나. 작업장 시설기준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재료 관리	원료·재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원료·재료에 대한 납품서·거래인증서·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라. 취급 방법 등	1) 소분·저장·포장·운송·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 종류가 다른 인증품 및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체의 제거 또는 위생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 3) 생산물의 저장·포장·운송·수입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유기식품 및 무농약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호]

제4조(인증신청 안내) 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사무소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내역을 안내하고,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인증대상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별표 1의2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2. 축산물 : 유기축산물 및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3. 가공식품 :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
4. 비식용유기가공품 :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 한 사료)
5. 취급자 인증품 :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하여 포장한 인증품

제5조의2(인증의 신청) ① 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인증대상자가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인증종류별(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의 산물·부산물, 유기가공식품, 양축용 유기사료·반려동물 유기사료,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 서류 중 규칙 별지 제6호, 제7호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8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내용과 방법은 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서식 또는 제1호의4서식과 같으며, 인증기관은 생산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성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 및 나목8)에 따라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2. 인삼, 더덕 등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산물·가축을 재배·사육한 기간만큼 기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접수한다. 이때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접수한 인증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하거나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중복하여 인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사업자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다만, 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인증기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받은 농장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확보하여 심사결과 보고서에 반영·첨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조제5항(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인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별표 2 제1호다목5)부터 9)까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수출·수입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2호의2서식의 영문인증서
2.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영문거래인증서(이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거래인증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규칙 제11조·제54조 및 고시에 따른 인증기준, 규칙 제20조에 따른 인증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증 변경승인 등) 규칙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는 변경 신청한 내용에 한하여 실시하되, 인증 사업장 규모의 축소,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갱신 :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제조·가공 및 취급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인증 사업장을 이전·확대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을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2.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인증갱신을 하지 않으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어 그 인증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는 경영관리와 생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사한다.
 - ③ 제1항제2호의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인증서의 인증 부가조건란에 인증품 출하가능량을 기재한다.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종류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종류는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분함.
- 농산물에 해당하는 인증 종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이 있고, 축산물의 인증은 유기축산물, 가공품에 해당하는 인증은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이 있음.

				
유기	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식품

그림 12-2.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 마크

12/13.3.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연1회 이상 인증사업의 농장소재, 작업장, 판매장 등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을 조사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함.

12/13.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 보도 포함)

- (언론보도) “친환경농산물 비의도적 농약 오염, 농가 요구시 재심사 의무화” (영농자재신문, 2023. 05. 09)
 -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취급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 완화,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유기농식품처럼 비인증 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23년 5월 10일)

- (언론보도) “친환경농산물 억울한 인증취소 막는다”(농민신문, 2023. 12. 12.)
 -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kg당 0.01mg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12월 13일 개정·시행.

12/13.5. 규제 개선 내용 제안²⁾

- '23년도에 친환경 인증제도는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항들을 전면 수용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음.
 - 우선, 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의 증거를 들어 주장 시 인증기관은 반드시 재심사 하도록 법제화하여 농가의 사전 구제 기회를 넓혔음(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3.5.10)
 - 또한 기존에 엄격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기준(불검출)을 현장 여건* 및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하여 선진국 수준(일반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1/20이하)로 개선함('23.12.13)
 - 개선과정은 연구용역('23.3), 국회 토론회('23.5~6), 생산자-소비자단체 협업('23.5~7)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
- * 드론 등 항공방제 확대로 일반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인증농가 필지로 유입될 확률 증가
- ** 주요국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MRL) : 미국(일반농산물 MRL의 1/20 이하), EU·영국(일반농산물 MRL 기준), 독일(0.01ppm 이하), 이탈리아(불검출)

- 인증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12.13)에 따른 하위 규정(고시, 지침 등) 일치·적용을 위해 후속 조치 마련·이행 필요
 - ①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하위 고시*에도 맞게 개정하고,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활동** 관련 구체적 내용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농관원 고시)
 - ** 농약 유입 사전예방, 농약 검출 시 결과(수치)보다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확대하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

 - ② 일률적 잔류농약 검사방법을 농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우수농가에게는 검사 유예 또는 선별 검사, 고위험군* 위주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신규농가, 농자재구매이력 과다 농가, 과거 농약검출 이력 농가, 관행재배 병행농가 등

2) 본 제안 내용은 김태연 외(2023),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 인증심사·관리 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③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농민) 뿐만 아니라 소비자(국민)에게도 인증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소비자단체 등이 인증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인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들이 필요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보전하여 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음을 강조할 필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안전성 44.9%, 건강증진 24.7%, 품질우수 13.7%로 치중되어 있어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소비로의 점진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음(‘22년 농진청 소비자인식조사)

1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14.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은 농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4년 6월부터 시행됨.
 - 동 제도의 시행목적은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신기술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등에 근거하여 추진됨.
- 정부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포함한 8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1개의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제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공통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청기업의 혼란 및 중복인증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음.
 - 이를 통해 인증 절차 및 서식을 통일하고, 신속 인증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인증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함.
- 최근 2024년 1월 기준 16개의 신기술이 새로이 인증됨.

표 14-1.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운영 현황

구분	분야	담당부처	근거법률	최초시행	운영기관
신기술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2014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2015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목재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임업진흥원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1989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	
	재난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2007	국민안전처
	환경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9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1996	농촌진흥청
신제품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에너지신문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36>)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신기술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의 사실 등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심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다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3.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림식품과학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 기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기술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등 현장 적용성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성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대상기술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대상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농림업·식품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 개발 시 기술적·산업적·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역할 분담, 자원 투입 방향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 인증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점에서 그 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④ 삭제 <2016. 12. 12.>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은 인증 유효기간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평가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기술(이하 “우수기술”이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기술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기술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서 및 그 기술의 사업화계획서
2. 우수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재무상황 및 경영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심사 및 소요자금심사로 나누어 우수기술 인정을 위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기술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는 영 제18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원의 장에게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기술역량진단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
2. 기관·단체 및 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
3. 기관·단체 및 산업체 소속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역량 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원의 장은 제1항의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원의 장은 기술역량진단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술역량진단을 요청한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41호)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및 신청·접수) ① 신기술 인증 대상의 기술분야는 육성법 제9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및 해당 기술분야의 평가체계 확립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제 시행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구비하여 제2항의 공고된 접수기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상시 신청할 수 있다.

④ 평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력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평가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신속인증심사 여부 결정·통보) ① 평가원장은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요령의 해당 조항을 준용한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신기술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일정 등 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원장은 심사일정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④ 평가원장은 단일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려운 융복합기술 등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 기술과 가장 관계있는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외부전문가를 전문분과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⑤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 및 인증 심사·평가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⑥ 평가원장은 신기술 인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 ⑦ 평가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또는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신기술 인증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1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 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는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4분의3 이상 출석시 실시하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 산정하여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 ④ 1차심사결과 2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⑤ 1차심사 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부여는 별지 제1호 붙임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 실적

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제6조(2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 ② 2차심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신청기술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한다.
- ③ 2차심사는 1차심사를 담당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장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 5인 이상으로 현장평가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로 현장평가심사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후보단에서 추가구성하여 실시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2차심사는 현장평가심사단의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3 이상이 동의한 기술을 3차심사에 상정한다.
- ⑤ 2차심사 시 인증 유효기간은 1차심사 결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의 적정성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부여한다. 단, 1차심사 시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과 상이한 경우 현장평가심사단의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사유 및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3차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2차심사의 적절성 및 심사결과가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기준과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3차심사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술을 상정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전문분과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분과위원장은 1·2차 심사에 참여한 분과위원 중에 1인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종합심사위원회는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 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에 대해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5조제5항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8조(인증 신청 기술의 재심사·평가) ① 평가원장은 제6조에 따른 2차심사·평가과정에서 신청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평가심사단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류로 판정할 수 있다.

1. 신청기술의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류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류 판정 통보일 기준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14.2. 인증 절차 및 기준

○ 신청자격

- 신청대상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의 장(기업, 농산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 서류 접수 기간

- 신청·접수 공고 기간 내 접수(연 2회 1~2월, 7~8월 공고)
- 인증 신청기술의 상용화 및 적용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를 공고기간 외에도 상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
- 신기술에 관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신청대상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
- 접수기간 :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신규신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

표 14-2.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기술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소분류	
1.농업기술 (4개)	① 유전자원·육종	•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관리 기술 등
	② 재배·생산	• 식량·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③ 유통·관리	• 식량·원예·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검역 기술 등
	④ 생명공학	•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2.축산·수의 기술(3개)	① 종축·생산	• 동물(가축) 육종·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 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② 유통·관리	• 축산물 유통·품질관리, 도축 저장기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기술 등
	③ 동물질병·수의약품	• 동물질병 예방·진단·진료·검역기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수의약품·공중보건 기술 등
3.식품 기술(3개)	① 식품가공·제조	• 식품화학, 식품미생물·발효, 식품 가공·공정 기술, 식품 포장·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② 기능성·영양	•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③ 위생·안전	• 식품 가공·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안전 기술 등s
4.임업기술 (2개)(※목재 생산/가공관련 기술 제외)	① 임산물 재배·생산	• 임산물 육종·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 자원 활용·재배 기술
	② 임산물 가공·유통	• 임산물 수확 후 관리·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5.농림식품 기반기술 (3개)	① 토목·시설·환경	• 농업수리·관개·배수, 토목 설계·구조·시공, 농지 조성·보전기술, 농업 환경·생태계 조절·관리·정화기술, 재해·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② 농자재	• 농약(화학·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③ 농림식품 기계·시스템	• 농업기계·시스템, 축산기계·시스템, 임업기계·시스템, 식품기계·시스 템, 농식품 시설 설계·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농림식품 융복합 (3개)	① 농생명 신소재·시스템	• 바이오칩·센서, 나노·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② 농생명 에너지 자원	•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③ 농생명 정보·전자	• 농림축산식품의 생산·유통 유틸리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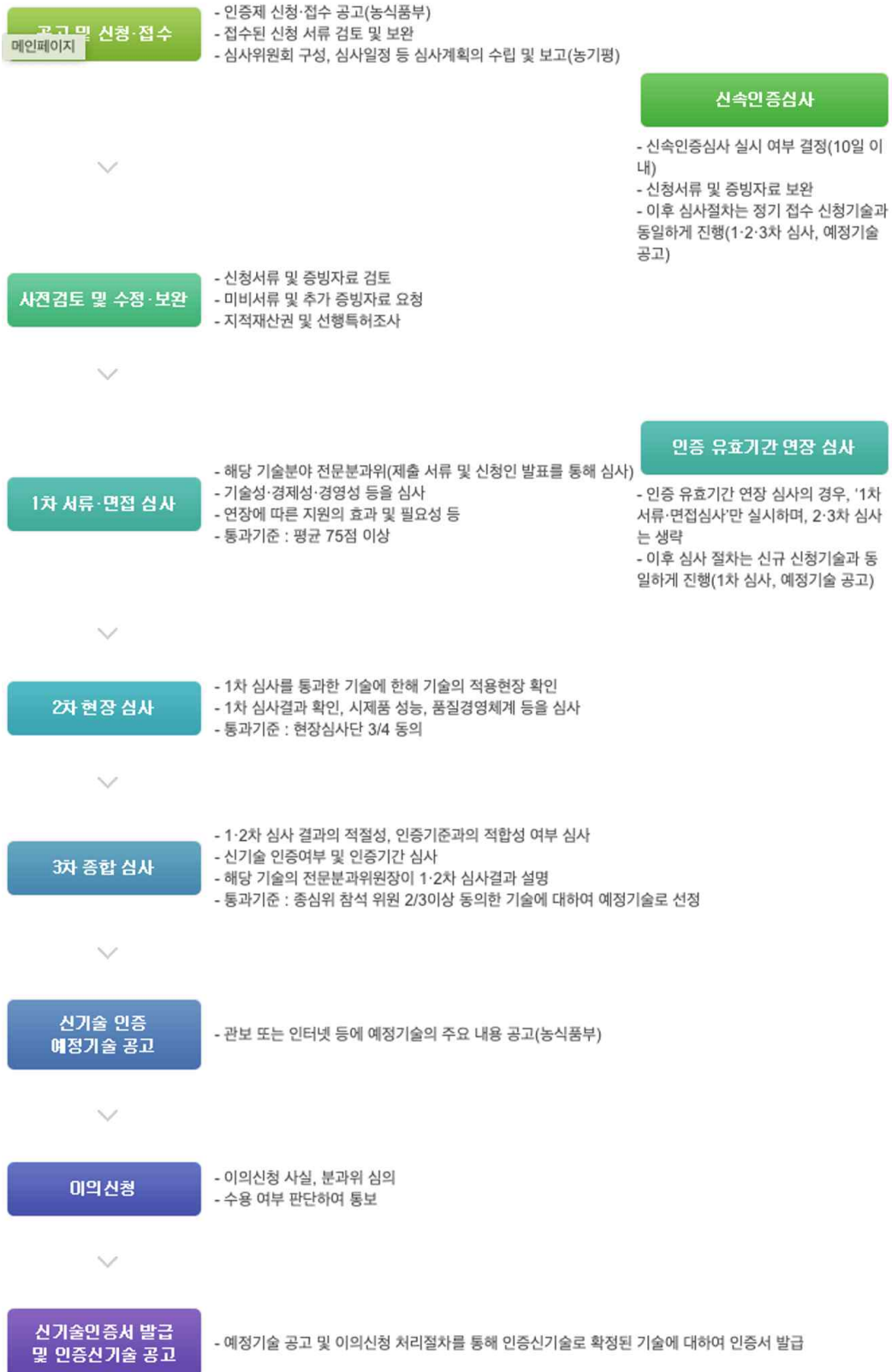


그림 14-1.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심사절차

표 14-3. 농림식품신기술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1차 심사	<p>A. 기술성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적용성: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재현성: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발전성: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파급성: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정도 <p>B. 경제성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제품대비성능: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2. 생산·가격 경쟁력: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3. 시장규모: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p>C. 경영성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경영체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2. 기술개발력: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3. 지원효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4. 기타: 경영의지 및 사업 추진 능력에 따라 추가 점수 부여 <p>D. 추가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2. 시제품의 확인 3. 추가확인 필요자료[인증유효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량: 평가집계표 평점(1~3년),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등록실적(1~3년) 2) 정성: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상·중·하), 신청기술·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상·중·하)
2차 심사	<p>A. 기술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개발현황 (인력, 투자, 시설 등) 2. 기술개발 방법 (독자적 기술력 확보/ 해외 기술력 도입)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p>B. 시제품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제품의 완성도 2. 시제품의 구조 및 성능수준 3. 부품·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및 제품설계수준 (독자설계 등) <p>C. 품질경영 체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라인 구축 정도 2. 공정관리(품질인증시스템) 3. 시험·검사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 상태 <p>D. 지원효과 및 필요성 상용화 개발자금 지원 필요성</p>
3차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심사·평가 과정의 적절성 • 심사·평가 결과와 농림신기술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 •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표 14-4. 신기술 인증 신청 등에 대한 심사·평가 비용

구분	1차 심사 (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 (현장심사)	3차 심사 (종합심사)
신기술 인증	20만원	50만원	20만원
신기술 신속인증	60만원	150만원	60만원

※ 심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2022. 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마련, 심사위원회의 정족수 규정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의 자료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로 개정
- 1차 심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8명’ 에서 ‘위원 4분의3 이상’ 으로 수정, 2차 심사위원회의 개의정족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정족수 규정을 정비
-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신설
-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근거규정을 마련

14.3. 사후 관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인증신기술을 대상으로 연1회 활용실적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음(근거: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 제21조).
 - 인증신기술의 상용화개발 및 후속연구개발 현황
 -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 기타 인증신기술의 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14.4.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제도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식품 분야의 우수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존속이 필요함.

1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15.1. 개요 및 관련 법령

-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장(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부터 제28조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하며, 유사 직거래의 난립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하여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가 진행됨.
- 2021년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 결과, 개선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인증 제도 명칭 변경, 농산물이 아닌 직거래업장이 대상이기에 ‘우수’ 삭제하고 ‘지정’ 변경 추진(‘24 하반기 예정)
-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인증,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지속 확산’ 추진 핵심 지표
 - 직거래법 제5조에 따라 「제2차(‘22~’26) 직거래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 ‘26년까지 핵심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 국정과제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매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추진 중이며,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은 운영 내실화 중점 추진 과제임.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농산물직거래법)

제6장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으려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 라 한다)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인증 신청·심사·재심사 및 인증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사업자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인증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제거·사용정지 또는 변경 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폐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을 조사하거나 인증사업자에게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 이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하며, 유사 직거래의 난립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됨.
 -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그림 15-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표시

15.2. 인증 절차 및 기준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하여 인증절차가 진행됨.
- aT가 인증계획 공고를 하면,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aT 푸드플랜부에 제출함. aT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증심사위원들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aT는 농산물직거래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제출함. 중앙협의회는 심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함. 중앙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인증취득점수가 70점 이상이 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인증됨. aT는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인증된 사업장에는 인증서를 발급함.
 - 부적합 사업자에게는 사유를 통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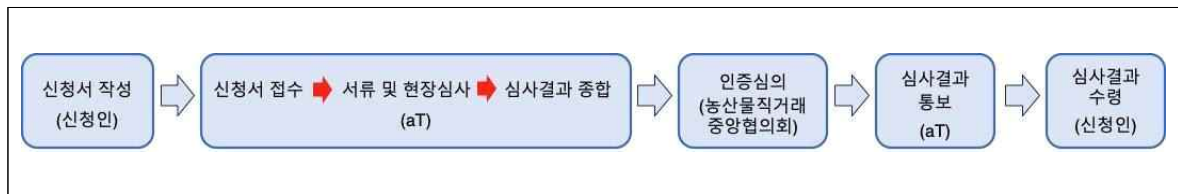


그림 15-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절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지정을 위한 인증기준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표 15-1. 직거래사업장 종류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쇼핑몰 공동체직거래 장		
합계	100점		100점		100점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계 1.취급	15	10	20	20	20점	20점	

량	비중	점	점	점	점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비중 * 식품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농산물 : 농·축·임산물, 농·축·임산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대기업 제외)
			5점					-
	2.사업 운영	18 점	10 점	10 점	-	30 점	10 점	● 직거래 취급수수료율 - 전년도 직거래 매출액 중 직거래 매출액에서 생산자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5점		5점		10 점	○ 품목별 판매대 또는 상품, 홈페이지 등에 생산자 정보 표시 - 필수항목 : 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가공식품은 유통기한) * 장터, 쇼펍, 공동체직거래장은 생산자명, 주소만 필수 표시
			3점		5점		10 점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모니터, 게시판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홈페이지 또는 상품별 상세페이지에 별도 표기 또는 가격정보사이트를 링크 한 경우
	3.안전성 관리	17 점	5점	20 점	5점	20 점	5점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 안전성 관리 매뉴얼 보유 및 아래 내용 포함 여부 ① 안전성 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10 점		10 점		○ 안전성 검사 실적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검사 실적	
			2점		5점		5점	○ 안전성 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4.생산자 관리	25 점	5점	25 점	5점	10 점	-	○ 참여생산자 수 - 전년도 1회 이상 출하한 참여생산자 인원
			5점		5점		-	○ 고령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65세 이상 생산자 비율
5점			5점		-		○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5점			5점		-		○ 상위 10% 생산자 집중도 - 전년도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중 매출액 상위 10%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5점			5점		10 점		○ 생산자 교육실적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5.소비자 교류	5점	5점	5점	5점	10 점	10 점	○ 소비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 전년도 소비자참여프로그램 운영실적	
(가점)	3점	1점	3점	3점	3점	3점	○ 사회공헌활동실적 - 전년도 사회공헌활동실적	
		2점		-		-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실적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 계 량	1. 생산자 구성	7점	7점	7점	7점	-	-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 등 참여도
	2. 지역 농산물	5점	5점	-	-	-	-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3. 운영 주체	5점	5점	10점	10점	10점	10점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 개선노력
	4. 안전성 관리	3점	3점	3점	3점	-	-		○ 안전성 검사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15.3. 사후관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함.
 - 인증기준에의 적합여부
 - 인증내용의 변경여부
 - 인증표시의 위반여부
 - 기타
- 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함.

15.4.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2017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제도 도입한 지 5년여가 경과하여 현시점에서 제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음.

- 또한,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제는 아직 육성 단계 수준으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한 제도임.
 - 국정과제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매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 중이며, 우수인증제 활성화는 운영 내실화의 중점 추진 과제.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은 단순 농산물 유통경로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영세·고령농 등 취약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 차별점이 있음
 - 특히, 양적 성장(직매장 개수 : 866개소, '22년 말 기준)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정책 방향 및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는 현 상황 고려 시 인증제도는 지속적 육성 및 확대가 필요한 상황.

세부과제	담당	'22	'23	'24	'25	'26
① 온라인 직거래 집중 육성						
가.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식생활/aT	시범사업	모델발굴	전국 확산		
나. 수준별 맞춤형 온라인 직거래 지원						
· 농가DB 중 3단계 수준 농가 비중	식생활/aT	2%	6	10	15	20
· 스마트 스튜디오(콘텐츠 제작 수)	식생활/aT	8,950	9,400	9,900	10,400	11,000
다. 온라인 직거래 장터 개설(누적)	식생활/aT	-	-	1개소(시범)	2	3
② 新유통경로 활성화						
가. 표준모델 정립 및 성장단계별 지원						
· 직거래 장터 표준운영규정 마련	식생활/aT	-	규정마련	시범적용	전국확산	-
· (권역별)대표장터 육성(누적)	식생활/aT	4개소	5	6	7	8
나. 직매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누적)	사회/aT/농협	820개소	860	910	950	1,000
·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누적)	사회/aT/농협	9,600	10,200	10,800	11,400	12,000
· 직매장 종사자·생산자 교육	사회/aT	연 1,000명	1,000	1,000	1,000	1,000
다. 관계지향형 직거래 본격 육성	식생활/aT	모델발굴	전국 확산			
③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가.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제고						
· 직매장 영세·고령 농업인 참여 확대(누적)	사회/aT	19.6천명	22.2	24.8	27.4	30
· 제로웨이스트 실천 직매장(누적)	사회/aT/환경부	5개소	16	28	39	50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개설 확대(누적)	사회/aT/지자체	8개소	14	20	25	30
· 로컬푸드 연계 사회적 경제모델 확산(누적)	사회/aT	46개소	58	72	86	100
나. 도농상생형 로컬푸드 확대						
· 도농상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누적)	사회/aT/지자체	3개소	5	7	8	10
·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누적)	사회/aT/지자체	2개소	3	4	5	6
다. 공공급식 로컬푸드 확산						
·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누적)	사회/지자체	88	103	119	135	150
· 군급식 가이드라인 마련	국방부/식품사회	마련	운영			
라.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산						
· 지역중심 먹거리 체계 제도적 기반 강화(누적)	사회/aT/지자체/소비자단체	(상위지수) 28%	31	34	37	40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역량 강화(누적)	사회/aT/지자체	(계획) 63개소 (센터) 25개소	85	106	128	150
· 지역먹거리계획 실행 기반 확충(누적)	사회/aT/지자체	(플랫폼) 40개소	35	40	50	60
			50	60	70	80

표 15-2-1.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 과제별 세부추진일정

세부과제	담당	'22	'23	'24	'25	'26
4 직거래 고도화 기반 조성						
가. 직거래 관련 인증제 활성화(누적)						
· 우수 직거래(직매장) 사업소(누적)	사회/aT	50개소	55	60	65	70
·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지자체(누적)	사회/지자체	17개소	25	33	42	50
나. 주체 육성 및 인지도 제고						
· 시민단체 주도 먹거리 포럼 개최	사회/aT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 바로정보 시스템 개선	사회/aT	개선	운영			
다.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구축						
· 직거래 실태조사 체계 구축	식생활/aT	체계마련	조사실시			
· 통계 DB화	식생활/aT	실태조사 연계 DB화	데이터 분석·공유			
라. 직거래 협력체계 고도화						
· 중앙협의회 구성·운영	식생활/aT	운영				
· 소비자 협력사업 추진	식생활/aT	과제발굴·사업추진				
마. 안전성 관리·연구개발(R&D)						
· GAP 인증 농가 비율	식생활/농관원	12.0%	12.5	13.0	13.3	13.6
· HMR, 기능성 등 연구개발 건수	과기/농기평	3	4	5	6	7

표 15-2-2.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 과제별 세부추진일정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육성단계로 국정과제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2026년까지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우수인증직거래사업장 70개소 육성
- 로컬푸드인증제 도입 지자체 50개 육성

○ 저부에서 추진 중인 직거래사업은 취약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추가함. 직거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지표를 마련하여 인증사업 및 사후관리를 추진 중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함.

○ 지자체 로컬푸드인증제와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제는 별개의 제도로 정부는 2개 제도에 대해 Two-track으로 모두 집중 육성을 하고 있음.

○ 농식품부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4호)을 2023년 11월 입법예고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임.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
-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성격이므로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마련
- 법에서 농산물, 농업인, 생산자단체 정의를 인용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명칭 변경(‘15.12월)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9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역농산물가공품의 판매촉진 등) ①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마친 지역농산물가공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의 농산물직거래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농산물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직거래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123)이 2023년 12월 발의되었고,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7호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편 또는 택배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 예외규정으로 일정 수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산물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이에 현행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허가를 받은 지역농산물가공품의 경우 농산물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15.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사업담당부서 의견, 법률 개정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하여 유지하길 권장함.
 - 이미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 농식품부의 법률 개정안에 제시한 바와 같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다만, 다양한 방식의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1) 직매장, (2) 직거래장터, (3) 인터넷쇼핑몰공동체직거래장의 3개로 제한되어 있는 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길 권장함.
 - 거래방식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직거래 매장 유형의 다양화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모든 인증/지정은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함. 즉, 소비자가 농산물(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지 않는 속성(특성)은 의미가 미약함.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비자가 ‘로컬푸드 매장’에 방문할 때, 가장 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시임. 이러한 표시는 매장 내외에 매우 큰 텍스트/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음.

- 반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표시는 소비자가 해당 매장 바로 앞에서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움. ‘표시’로 인한 차별화가 잘 되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 선택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당 표시 규격을 한 번 검토하길 권장함.



그림 15-3. 로컬푸드 직매장 (예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2017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로, 제도 도입한 지 5년여가 경과하여 육성단계인 현시점에서 제도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음.

- 또한,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계획을 갖고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은 육성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제도의 존속·수정·폐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

16.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999년 도입된 제도임.
-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됨.
-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성, 유명성,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을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는 농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며, 특정 물품에 대한 단순한 생산지역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차별되는 제도임.
- 농산물의지리적표시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장(제32조~제55조), 시행령 제3장(제12조~제18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등에 근거하여 실시됨.
 - 다만, 김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름.

그림 16-1.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표시 내용				
표지				
표시사항	<table border="1"> <tr> <td rowspan="2"> </td> <td>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td> </tr> <tr> <td>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td> </tr> </table>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대상지역, 신청자격, 심의·공고의 절차, 이의신청 절차 및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원부(原簿)에 지리적표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회복에 대한 사항을 등록·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보관 및 생산·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리적표시권) ①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과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1. 법인 자격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

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특허법」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제1호(특허출원의 포기)는 제외한다],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한정한다],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6조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고, 「특허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같은 조 제2호 중 “제180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0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46조제3호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제8호 및 제9호”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는 “지리적표시”로,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특허청”·“특허청장” 및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특허심판원”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로, “심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

장”으로, “심판관”은 “심판위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정한다.
-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위촉한다.
- 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2조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⑥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심판청구 방식) ①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補正)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제32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 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49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 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한다.

제49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0조(「특허법」의 준용) ①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법에서 준용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변리사”는 “대리인”으로 본다.

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지리적표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제1항”으로 본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1.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탈퇴)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표시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사항

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칭·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3급·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제17조의2(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심판위원회의 운영)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으면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심판번호와 심판위원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나 심판 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판위원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심판위원회는 심리(審理)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지리적표시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특산품의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7. 자체품질기준
8. 품질관리계획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특허청장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
2.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3. 자체품질기준 중 제품생산기준, 원료생산기준 또는 가공기준

④ 삭제 <2016. 12.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반(이하 “현지 확인반”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이하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의 해당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으로 할 수 없다.

② 현지 확인반은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확인반의 반원으로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소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15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풋말로 표시할 수 있다.

16.2. 인증 절차 및 기준

○ 신청자격

-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 대상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 심의기준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 김치 및 인삼류의 지리적표시제 대상지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 근거하여 김치와 인삼류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음.

- 다만, “대한민국 김치” 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용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해야 하며, 수출용 김치는 ‘김치산업진흥법’ 에서 정의한 주원료 기준만 준수하면 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김치산업 진흥법 제2조 2호: “주원료” 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 지리적표시의 심판
 -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16.3. 사후 관리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수출용 김치에 대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김치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3가지 원료에 대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야 함. 이는 배추와 무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마늘 등을 국내산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함.
 - 이에 대해 김치업계 일부에서는 양념채소류인 고춧가루 등을 국내 농가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과 국내산 원료의 높은 단가를 고려할 때, 국제 시장에서의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기준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임.
 - 반면, 농업계 등은 국내산 김치의 차별화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료 이용에 대한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함.

16.5. 외국 사례

- EU의 지리적 표시제는 크게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원산지명칭 보호)와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표시보호) 제도로 나뉘어짐.
 - PDO는 해당지역의 농수산물을 사용해 그 지역에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 가공, 제조한 제품들에 붙여지며, PGI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농수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재배됐거나 혹은 다른 지역 농수산물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소재한 공장에서 생산, 가공한 식품에 부여됨.

16.6.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 농식품 시장에서의 명칭 보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제도임.
 - 또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증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수출용 김치에 대해서는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적용함에 있어 혼합된 비율이 높은 3가지 원료에 대해서만 국내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원료에 대해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국내 판매용 김치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완화 요구가 제기됨.
 -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고춧가루 재배 농가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 측과 김치 수출기업 측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측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 규제 개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17. 농업기계 검정

17.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업기계 검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한 제도
 - 1978년부터 시행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79년에 설립된 농업기계화연구소(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가 농기계 검정업무를 담당함.
 - 2010년 7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국립농업과학원의 검정 인력과 검정시설 및 장비를 이관받아 검정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진흥원 내 스마트농업본부 농기계검정팀이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농업기계의 결함이나 오작동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의무로 전환함.
 - 2012년부터 농기계검정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으로 검정원이 찾아가는 현장검정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방문검정에 따른 장비운반 등 물류비와 인력상주에 따른 비용 등이 크게 감소함.
 - 2017년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분석검정센터가 익산으로 이전하면서 농기계검정센터도 함께 이전함.
 - 2021년부터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품질 안전 농기계 보급을 위한 농기계 검정 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 위원, 농기계 유관기관, 학계,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제조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 2022년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가공기계에 대한 검정도 실시하기 시작함.
 - 농산물 가공기계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험제도가 없어 업체가 제시한 성능과 실제 성능 사이에 차이가 크거나 안전상 품질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음.
 - 2022년에 과립기, 제환기, 착유기, 추출기, 살균기, 착즙기, 분쇄기, 혼합기, 포장기, 건조기, 세척기 등 11종의 가공기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곡물볶음기 및 충전기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감.

- 2023년 1월에는 기존의 농업기계 검정 기준이 농기계 기술발전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기준」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고시를 개정함.
 - 해당 개정에서는 검정기준을 최근의 경향에 맞게 수정한 부분도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한 내용도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으로 (i) 자율주행 경로오차(70mm)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 (ii) 농업기계 검정기준은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 시행, (iii) 1회 동작으로 비상 정지할 수 있는 적색 비상정지 스위치 부착 의무화 등

<p>■ 「농업기계화 촉진법」</p> <p>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p> <p>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4. 삭제
- ② 별표 4에 따른 검정대상 농업기계 외의 농업기계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임의적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3. 선택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을 받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항목(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정항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검정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이하 “구조기준”이라 한다) 및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안전기준”이란 농업기계 사용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규정한 안전 사항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3. “성능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작업능력, 효율,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4. “조작의 난이도 기준”이란 농업기계의 취급 및 조작 용이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별표 4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정기준 등)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안전기준과 별표 2의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의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 자율주행 이앙기, 자율주행 콤바인의 자율주행 경로 오차(70mm)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 대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pm 1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검정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정 자료의 제출 등)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 결과처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
4. 삭제

②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키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신청 절차 및 기준

-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면 검정신청서, 검정 용도의 제품(공시품),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됨.
 -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 다. 사용설명서 1부
 -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
 - 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17.3. 사후 관리

- 농업기계 검정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인증을 받은 농업기계라고 하더라도 품질 결함 등이 발견되면 사후에 별도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에는 (i)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품질 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또한, 매 3년마다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한국농기계신문, 2015. 08. 31)
 - 2015년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됨.
 - 당시 조합은 은 가정용 도정기, 농산물 전기건조기, 농산물 비파괴선별기, 보행형 동력운반차, 보행형 비료살포기, 농업기계용 등화장치 등 일부 기계에 대해 검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신청함.
 - 그러나 농식품부는 검정기관의 독립성 문제와 전담인력 부족 문제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함.
 - 또한, 재단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조합이 국가 보전 없이 검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언론보도) “농기계조합,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금지 안내”(농기자재신문, 2018. 06. 04)
 -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 중고 농업기계(트랙터, 콤파인 등)의 유통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관련 제재 규정을 강화함.

- (보도자료) “농업용드론의 정부 인증·검증 간소화로 농민 곁으로 빠르게 다가간다!” (국토교통부, 2018. 07. 08)
 - 농업용드론이 제작 후 시험비행 → 안전성인증 → 농업기계검정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부터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가 다르고, 소요기간이 길고, 검사일정도 달라 검사절차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많았음.
 - 이에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원화 되어있던 농업용드론의 안전성인증(국토교통부)과 농업기계 검정(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

원화하고, 안전성인증과 검정 절차를 간소화함.

-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하여 검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언론보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유통 질서 확립 기대”(농축유통신문, 2022. 06. 23)

-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제조번호 및 농업용 기계 표시제도 강화 방안 시행
- 농업용 트랙터 등 농업기계 검정대상인 42개 종류의 농업기계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도록 함.
- 또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과 함께 제조번호를 본체중 차대에 각인해야 하도록 함.
-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 농업기계 수입·생산·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함.

○ (언론보도) “국내 자율주행 농기계 검정기준 고성능 센서만 장려(?)”(한국농기계신문, 2023. 04. 17)

- 농업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RTK 방식(1~3cm 정확도)과 DGPS 방식(1~5m)으로 나뉨. 현재의 자율주행 검정기준으로는 오차값이 7cm 이내로 정하고 있어 RTK 방식만 가능한 상황
- RTK 방식은 정밀도 면에서 우수하지만 고성능인 만큼 가격이 비싸 일반 농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DGPS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도 500~1000만원을 더 지불하고 RTK 방식을 구매하는 상황 벌어질 수도 있음.
- 이러한 기준이 정해질 경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 고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 국내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및 제품의 보편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7.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검토 결과, 농업기계 검정은 1979년부터 시행되어 역사가 오래 되고 관련 규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이 이루어져왔음. 그 중에는 농업기계 표시제도와 같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경우도 있었음.
 - 농업기계 검정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매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할 때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농기계 품질·안전 협의체’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및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음.
 - 이번 연구과 관련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업계에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나 농업기계 검정과 관련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음.

- 자율주행 경로오차(70mm): 당초 일부 업체가 현행 기준이 RTK 방식에서만 가능하여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 완화를 요청함.
 - 그 동안 RTK 방식 기기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기존의 DGPS 방식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그에 따라 업계에서도 DGPS 대신 RTK 방식을 적극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DGPS 방식의 경우 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어 농작업 시 중복 작업구간이 나타나거나 농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농기계 자율 주행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
 - 따라서 현행 기준인 70mm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농업기계검정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개선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GPS나 근거리통신망 등의 새로운 기술이 농업기계에도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음.

18.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18.1. 개요 및 관련 법령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따라 1995년에 도입된 제도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농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업기계 등을 선정해 지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선정 이후 해당 기종에 대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없고 지정 과정에서 일부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지정 실적이 저조했으나, 이후 농업인에 대한 용자 지원 및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도입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2018년에는 발농업 기계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발작물용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제도’가 도입됨. 발작물용 신기술농업기계로 선정되면 발작물 주산지 지역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영농법인 등에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됨.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로,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기계와 비교해 뛰어나야 하며, 같은 품질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함.
 - 이와 함께, 기술적 파급 효과와 수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함.
 - 특히 발농업 기계의 경우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기존 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돼야 지정될 수 있음.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발농업 기계 7년) 내의 제품만 해당되며, 국내의 일반화된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수입산 사용한 제품 등은 제외됨.

- 신기술 지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인증표시(NET 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됨.
 - 특히, 농업인이 신제품 구입할 때 신기술 농업기계는 정부 융자지원 한도액의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은 생산원자재 구입비축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과 해당 제조업체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임.



그림 18-1. 신기술 인증 마크

<p>■ 「농업기계화 촉진법」</p> <p>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p> <p>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p>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7. 발농업기계(「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발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단, 발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판매개시일은 최초 정부용자지원 판매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
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
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
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농업기계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산품이 아닌 농업기계

제2조의2(신기술 농업기계 원산지 판정기준)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산품 여부의 판정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가.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
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관세율표상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원산지가 당해국가인 경우
가. 수입제품으로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

제3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접수)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력을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평가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 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이 적용된 유사 농업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을 위하여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심사는 전문위원회에서 서류·면접심사 결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평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정받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기간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의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기술 농업기계 최초지정 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평가 및 방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발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 특례) 타 법령에 의해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신청 농업기계는 서류·면접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제5조(서류·면접심사) ① 서류·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서류·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서류·면접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④ 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

- 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면접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심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④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제7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는 서류·면접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서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만약 출석위원 중 현장적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제7조의2(현장실증시험) ① 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실증시험단을 구성하며, 현장실증시험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험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시험장소, 시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보류 및 재심사) ① 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기계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처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추가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농업기계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 ⑥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18.2. 신청 절차 및 기준

- 신청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이후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함.
 - 서류·면접심사: 기술성, 경제성을 비롯해 실용화 정도, 우수 품질이 생산 가능한 품질경영체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
 - 현장심사: 제품평가, 품질 관리체계, 신청 농기계 시장성, 부품·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등을 검토
 - 종합심사: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지정 필요성 등을 평가

- 발농업기계의 경우, 종합검정성적서나 그밖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표한 시험 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획득한 농업기계의 경우 서류·면접심사의 기술성 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18.3. 사후 관리

-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16조(지정 취소)를 통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된 농업기계가 (i)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았거나, (ii)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제17조에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18.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발전하는 신기술…농업기계 명칭·범위 재설정해야”(한농어민신문, 2022. 12. 02)
 - 신기종 농업기계가 새롭게 개발되고 작업 기능 또한 첨단화되고 있어 농업기계 기종별 명칭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한국농업기계학회·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가 ‘농업기계 명칭과 범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농업용무인항공기’는 ‘농업용무인비행장치’로 변경하고, 세부 명칭으로 농업용무인헬기와 농업용드론을 제안함.
 - 정식기는 명칭은 유지하되, 식부장치에 대해서 식부 기능을 하면 해당 장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비료살포기는 ‘적재장치, 살포 또는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입상비료, 분말비료, 액상비료 또는 퇴비 등을 농경지에 살포하는 자주식 기계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로 개념을 재정리할 것을 제안함.
 - 동력제초기는 ‘제초기’로 단순화하되, 제초용 약제를 살포하는 자주식 기계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로 정의할 것을 제안함.
 - 농업용방제기는 세부 기종인 주행형동력분무기를 ‘분무기’로 하고, 연무기는 ‘농업용연무기’로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언론보도) “농작업 돕는 ‘협동 로봇’, 정부 보조금 받는다”(농업인신문, 2023. 03. 10)
 - 기존 지게차와 같은 농기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저렴하게 대여 할 수 있는 반면, 입는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는 보조금 대상 농기계가 아니라서 임대가 어렵고 구매를 하기에는 가격이 비싼 문제점 대두됨.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용 로봇 등에 대한 검정 기준을 2024년까지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 농기계로 지정받아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함.
 - 특히, 협동로봇으로 구분되는 농작업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로봇팔의 개수와 상

관없이 기존 안전기준(고용부)을 적용받도록 함.

- 중·소규모 농업 형태에서는 대규모 농업에 유리한 자율주행 농기계·드론·농업용 센서 기술보다, 웨어러블 기술이 적합함.
- 웨어러블 기술은 작업자와 가축의 상태를 파악하는 웨어러블 센서 시스템과 작업자의 동작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으로 나뉨.

18.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2018년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발농업기계의 신기술 지정 문턱을 낮추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한 적이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증된 성적서를 제출한 국내산 발농업기계는 기존 3단계 심사(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절차를 1단계 종합심사만으로 축소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최초 정부유자지원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서 발농업기계는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함.
 - 또한, 발농업기계의 국산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제조원가계산서를 별도 제출토록 함.

- 2021년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의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조항을 추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농기계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2023년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을 신기술 농업기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개선되어 왔음.

- 따라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개선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웨어러블 로봇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계나 기술 등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신기술과 관련된 기준이나 규격 및 검증절차 등을 제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기계의 실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19.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

19.1. 개요 및 관련 법령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제도는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도모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또는 그 식재료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 강화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됨.
- 인증대상은 가공식품과 음식점 등을 포함함.
 -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 음식점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제공하는 식품접객업(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및 집단급식소
-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음식점등은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경우 소정의 인증 절차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함.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됨.

표 19-1. 원산지 인증 표시방법

	가공식품	음식점등
표시방법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	인증 받은 음식점의 간판·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인증표시 및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
표지	  <p>인증기관명: 인증번호:</p>	  <p>인증기관명: 인증번호:</p>
현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원산지인증의 절차)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품목별로,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2.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가공식품의 원재료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산지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원산지인증의 심사 방법·절차 등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①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사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영업자가 그 인증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음식점등의 간판이나 메뉴판 또는 음식점 내부·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 및 표시사

항을 부착하거나 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4호)

제10조(원산지인증 세부기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를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제11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품등 표시변경 등의 명령
3. 법 제29조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의 취소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5.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3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2조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원산지인증 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칙 제2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
-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산지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조사 등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시기는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인증사업자의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일자,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
2. 최근 1년간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점검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
2. 인증품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인증기관이 신규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제17조(점검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의 구분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점검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인증기관 점검사항 등) ① 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
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품등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
2. 인증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 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때
4. 인증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등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5. 기타 원장이 인증품등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0조(조사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조사대상 인증품등의 수 및 인증된 가공식품의 생산량이나 인증된 음식점등의 매출액, 인증품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 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한과 인증사업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9조 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한다.

제22조(인증품등 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 등이 인증품등에 대하여 조사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방식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2호서식의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조사 시료 중 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이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사업장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때에는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27조(인증취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
 - 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
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
 - 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원재료 배합비율에 미달되거나, 음식점등에서 표시한 식재료 조달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식재료 조달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관

련)

5. 전업·폐업 등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①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
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
3.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③ 원장은 제2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정 취소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19.2. 지정 절차 및 기준



그림 19-2. 원산지 인증절차

○ 인증 구비서류

표 19-2. 원산지 인증 심사 구비서류

가공식품	음식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급계약서, 계약재배서, 경매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 최근 1년간 해당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 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급계약서, 계약재배서, 경매 증명서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19.2.1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기준

○ 기본 요구사항

- 영업 등록·허가일부터 2년 경과한 작업장
- 최근 2년간 영업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없음
- 원산지에 관한 기록 유지 및 증빙자료 보관·관리
- 시설기준,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 적합

○ 원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는 농수산물 기준
- 95%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국가산 농수산물(첨가한 물 제외)
- 식품첨가물은 1.5%까지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원재료의 다른 원산지의 농수산물 혼합 금지

19.2.2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기준

○ 기본 요구사항

- 영업 신고일부터 2년 경과한 영업장
- 최근 2년간 영업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없음
- 원산지에 관한 기록 유지 및 증빙자료 보관·관리
- 시설기준, 품질 및 안전관리가 해당 법률에 적합

○ 식재료의 원산지 관련 요구사항

-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 기준
- 95%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국가산 농수산물(별도 판매 주류 제외)
- 음식점 의무표시 대상품목은 반드시 인증대상 국가산
- 식재료로 사용된 가공식품의 원재료 농수산물의 함량 계산
- 동일한 식재료의 다른 원산지의 농수산물 혼합 금지

19.3. 사후 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 신뢰성 확보

-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 정기심사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원산지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실시

- 식품관련협회 등 외부 관련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원산지 인증제도 교육
-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를 통한 제도 안내
- 스마트폰 앱 개발 및 보급, SNS, 농림축산식품부·유관기관·지자체·관련 단체 홈페이지 및 공중파 등 온라인 홍보

19.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주기, 기존 3년서 4년으로 변경”(식품저널, 2023. 06. 27.)
 -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
 - 원산지 인증의 정기 심사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완화
 -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개정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로 원산지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유지가 필요한 인증 제도임.

19.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도입 취지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의 원재료로 가공 또는 조리한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증제품 선택 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함.
- 관련 법령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규제를 검토한 결과 규제 관련 개선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현행 내용을 **존속**하기를 권장함.

20. 무병화 인증

20.1. 개요 및 관련 법령

- 무병화 인증제는 「종자산업법」 제32조의2(무병화인증)에 근거한 인증제도로, 무병 재료(접수, 대목)를 이용하여 무병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규격, 재배포장 및 생산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한 묘목을 무병묘로 인증하는 제도임.
 - 종자업자가 5대 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음.
 - 2023년 12월 28일부로 시행됨.³⁾

- (추진배경)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 과수산업 점검 결과 바이러스 감염 묘목 유통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⁴⁾
 - 국내 유통량의 30~60%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생산량 감소 및 당도 저하 등으로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함.
 - 국내 과수 묘목 시장 규모는 618억 원으로 종자 시장 전체의 10%수준('17)
 - 묘목 생산량 1,339만 주 중 557만 주(42%)가 5대 과수(사과 287, 복숭아 136, 포도 67, 배 48, 감귤 19)임.
 - 5대 과수 묘목 생산량 557만 주 중 약 390만 주(70%)가 시장공급으로 추정

3) 출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도자료, “과수 무병화인증제, 이렇게 진행됩니다!”(등록일 : 2023.12.18.)

4) 출처 : 안진석(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2023.12.13.,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 소개, 과수무병화인증심포지엄 자료집

○ 이에 과수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함.

*보급률목표:(`22)5%/195천 주→(`23)10/390→(`24)20/780→(`26)40/1,560→(`30)60/2,340

표 20-1. 연도별 과수산업 선진화 대책

연도	과수산업 선진화 대책
2005	6대(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감) 과종 무독묘 생산·공급체계 구축
	무독묘 묘포장 15개소 145ha(10ha/개소) 설치 등
2016	농가선호 품종 무병화(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검정원종(VT) 활용
	보증묘 Virus 검정 의무화
	무병묘 생산·유통 협의체 운영
2019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종자산업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제정)
	원종·모수·무병묘 생산공급 지원사업 추진 및 무병묘 공급량 목표 설정

○ 인증의 표시

- 1개/1주, 1개/10주 또는 대량 구매인 경우 구매내역서에 무병묘 명시 후 1개 인증라벨 부착

무병화인증번호(인증기관코드·인증종자업자코드·과종·품종·일련번호)

무 병 화 인 증	① 작물명:	③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② 품종명:	⑥ 무병화인증일자:
	⑦ 대목명:	⑦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④ 생산업체명(종자업등록번호):	⑧ 무병화인증기관:
인증기관명:		

그림 20-1. 무병화 인증의 표시 방법

■ 「종사산업법」

제36조의2(무병화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무병화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3.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지정 갱신의 절차·방법 및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3.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5.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6.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조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 과수(사과·배·포도·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 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 종자”라 한다)를 판매·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모종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⑤ 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목록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용
3.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에 관한 서류·자료
-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사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조사하게 해야 한다.

1. 정기 점검·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점검·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민원·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실시
- ② 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 서식에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자산업법 하위규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표 20-2. 종자산업법 하위규정 제정안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3조(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4~7조(인증대상, 인증신청서 접수) 제8~12조(인증기준, 인증심사, 심사결과 통보) 제13~14조(인증표시, 인증라벨 부착) 제15~19조(인증 기준 준수, 사후관리, 실적보고) 제20~21조(무병재료 등록 및 이력 관리)	제1~3조(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4~5조(지정 세부사항, 지정 신청) 제6~7조(지정 심사, 심사결과 통보) 제8~9조(인증기관 조사 점검, 사후관리) 제10~12조(인증기관 지정 갱신, 철회, 변경신고)

20.2. 인증 절차 및 기준

- 무병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종자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 신청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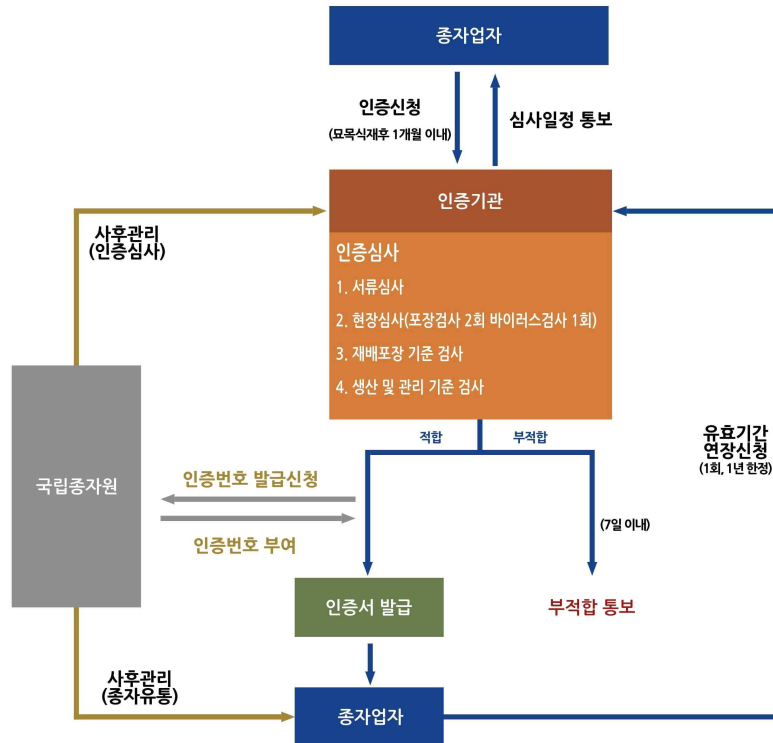


그림 20-2. 무병화 인증 절차

-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인증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발급함.
 1. 심사반 편성
 2. 인증심사(포장검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 평가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3. 무병화인증 여부 판정(인증서 발급, 인증서 부적합 통보)
 - 적합(인증서 발급), 부적합(7일 이내에 부적합 사유 통보)
 4. 인증번호 발급 신청(인증기관 → 종자원)
 5. 인증번호 부여(종자원 → 인증기관)
 6. 무병화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1년, 인증기관 → 종자업자)
 7. 유효기간 연장 신청 (종자업자 → 인증기관)

- 포장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
 - 생육기간 3개월의 시기(4~6월, 7~9월, 10~익년 2월) 중 2회 소집단 구성하여 포장검사(포장검사)
 - 2회차 포장검사 시 표본 조사구에서 시료 추출하여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병행 실시
 - 식품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31에 따라 표본추출 95%,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조사
(45점/100주, 57점/1,000주, 59점/10,000주) 조사

표 20-3. 포장검사 및 특정병(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검정 기준

생산단계	항목	최고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무	무	무	2.0	
원종포	무	무	무	2.0	
모수포	무	무	무	6.0	
중식포(보급종)	1.0	무	2.0	10.0	

○ 묘목 규격 검사

- 과수별 묘목의 길이 및 직경 기준 검사

표 20-4. 과수별 묘목 길이 및 직경 기준

작물	묘목의 길이(cm)	묘목의 직경(mm)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사과			
- 이중접목묘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 이상	12 이상	
- 포트묘(접목)	25 이상	2 이상	
○ 배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복숭아	100 이상	10 이상	
○ 포도			
- 접목묘	50 이상	6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삽목묘	25 이상	6 이상	근두암종병(뿌리혹병): 무
- 포트묘(접목)	50 이상	2 이상	
○ 감귤류			궤양병: 무
- 접목묘	80 이상	7 이상	
- 포트묘(접목)	80 이상	7 이상	

○ 재배포장 검사

- 동일지역에서 묘목을 3년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 것(토양소독 시 예외)
- 같은 속·종의 나무나 과수원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격리

○ 생산관리 검사

- 품종 또는 계통별로 묘목을 재식
- 농기계, 농자재 및 도구 등을 소독하여 사용
- 병해충 방제 및 농작업 일지 작성 등

- 무병화인증 심사비용은 품질검사비(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와 현지조사 출장비를 합하여 산정함.
 -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 금액을 적용하고, 실제 심사 기간 및 인원 적용

표 20-5.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항목	내용	수수료	산출근거
심사·검사비 (가+나+다)	가. 서류심사	신청 건당 5만 원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품종목록 서류심사료 준용
	나. 현장심사	심사료 20만 원+10a당 2만 원	심사료+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포장검사료 준용
	다. 품질검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	검사료 20만 원+점당 14만 원	검사료+6점(59시료)*4만 원=24만 원

20.3. 사후 관리

- 무병화 인증에 대한 조사·점검은 정기조사 연 1회 이상 및 수시조사(신고 접수시)
 - 조사 점검 시 소유자 입회,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작성 및 행정처분(인증취소, 시정명령, 표시 제거·정지, 종자회수 등) 조치함.

- 행정처분 -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 마. 무병화인증의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행정처분 - 개별 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폐기	-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 인증의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 조치	인증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폐기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 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인증종자의 인증 표시의 제거	인증취소 및 인증종자의 회수·폐기
4)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인증취소 및 인증종자의 판매, 보급의 금지	-

나. 무병화 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무병화인증표시의 제거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금지

20.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과수 무병화인증 심포지엄’(2023. 12. 18) 등에 참석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무병화의 기준, 규모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의 문제점, 무병화 과수 판매 이후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현재 무병화인증 도입 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규제의 불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후 무병화 인증 주체, 무병화 인증을 받는 업체, 무병화 인증을 받은 과수를 매입하여 식재한 농업인 등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나타나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제도 시행 전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전에 규제의 불합리성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시점에서 무병화 인증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1. 차품질인증

21.1. 개요 및 관련 법령

- 차품질인증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근거하며, 차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인증제도임.
- 해당 법령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 17일 차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 및 품평회 개최를 위한 법령 신설 및 개정이 한 차례 이루어짐.
- 차품질인증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제도이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계 인식도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앞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차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 5조 관련)

1. 적용범위: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차나무 앞의 채취시기에 따른 종류 및 기준

가. 표시종류: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

나. 표시종류별 기준

- 1) 우전: 해당 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으로 평년에 해당하는 절기상 곡우(穀雨)이전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 2) 곡우: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이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2엽을 사용한 것
- 3) 세작: 절기상 곡우 이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 4) 중작: 5월에 채취한 차나무 잎으로 1심3엽을 사용한 것
- 5) 대작: 6월 이후에 채취한 차나무 잎을 사용한 것

다. 나목의 표시종류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절기상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곡우(첫물차 또는 1번차)’ 로 표시할 수 있다.
- 2)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첫 번째 채취한 1심2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첫물차 또는 1번차)’ 로 표시할 수 있다.
- 3)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세작(두물차 또는 2번차)’, 5월에 두 번째 채취한 1심3엽의 차나무 잎으로 가공·제조한 제품에는 ‘중작(두물차 또는 2번차)’ 로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차나무 잎 채취시기: 해당 제품의 차나무 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표시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나무 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채취된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차나무 잎 채취지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나무 잎을 채취한 시·군·구명을 표시하되, 여러 시·군·구에서 채취한 차나무 잎을 혼합하여 차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시·도명 표시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21.2. 인증 절차 및 기준

- 차품질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따라 인증하므로, 전통식품품질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인증됨.



그림 21-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절차

- 전통식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진행함.
 - 공장심사는 공장입지 등 1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제품검사는 별도의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심사항목이 HACCP의 시설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항목을 면제해주거나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사 관련 규제 개선사항(2013. 12)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i) HACCP 적용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심사 시에 4개 항목(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기심사(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표 21-1.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방법 및 판정기준

	심사방법	판단기준
공장 심사	최근 1년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 평점이 70점 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
제품 심사	공장 심사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또는 시험·검사 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표 21-2. 전통식품 품질인증 평가 사항

심사 항목	주요 평가 요건
1. 공장 입지	주위환경, 건물구조, 운송여건 및 차량진출입로 등
2. 작업장	교차오염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및 구획여부, 작업장내의 벽과 바닥의 구조, 작업장내의 온도 적정여부, 작업장내의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의 환기시설적정여부, 방충 및 방서시설, 작업장내부의 수세,세척,소독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 내의 청결상태 등
3. 제조설비	적정제조설비의 설치여부, 설비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의 적정성 등
4. 원료 조달 · 관리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5. 주요공정 관리	제조작업표준 수립 및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해당규격 및 품질기준 검사여부, 해당분야 전문인력을 통한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최종제품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등
6. 용수관리	용수의 수질, 급수시설, 취수원 및 관련법에 따른 수질기준에의 적정여부 등
7. 개인위생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8. 환경위생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태,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현황,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 및 관리상태 등
9. 유통체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의 적정성, 인증신청품목의 행정처분유무 및 관리현황, 부적합품 처리의 적정성 등
10. 포장 및 표시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 인증심사 관련 수수료는 기본수수료를 포함한 6가지 수수료가 있으며,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의 경우에는 할인도 가능함.

표 21-3. 전통식품 품질인증 관련 수수료

수수료 항목	금액 기준
가. 기본 수수료	인건비·사무실운영비·감가상각비·인증 사후관리비 등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다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 2) 출장기간은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산정
다. 인증심사원 수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우수식품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국내산 주원료조달방법 및 검증, 주원료 입고 관리적정성 등
마. 시료운반·조작비	종업원의 정기건강진단 및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위생장구의 착용상태, 외부인의 작업장내 출입 및 관리현황 등
바.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포장재의 적합성, 포장재의 입·출고 관리의 적정성, 표기사항의 적법성 및 관리현황 등

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제품시험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naqs.go.kr/goodfood/portal/index.jsp)

21.3. 사후 관리

- 전통식품 품질인증(차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생산공장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 과태료 부과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함.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음.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음.

라.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마. 인증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사용 정지 또는 판매정지로 경감할 수 있음.

21.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차품질인증에 관한 언론보도를 찾아보기 어려웠음. 차 상품 품질 자체를 논하기보다 유기농이나 친환경과 관련된 인증이 훨씬 부각되어짐.

○ 업계 인식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에서도 인지하지 못함.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음.

21.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차품질인증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인증제도이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업계에서는 친환경적 요소(예컨데, 유기농, 무농약 등)와 기능성을 중점으로 차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인증제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임.
 - 해당 인증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법령 정보가 유일하였으며, 인증사례를 찾을 수 없었음.
- 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제시한 차 품질 표시기준에서도 채취시기, 나목의 표시 종류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 본법에서 제시한 기준만으로 좋은 차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품질이 좋은 차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지표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법 개정으로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음. 품평회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품질에 대한 민관 협의점을 찾아가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친환경적 요소와 기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폐지를 권장함**.

2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22.1. 개요 및 관련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제조·가공제품을 만들고(2차산업), 체험농장·관광 및 수출 등 여러 서비스(3차산업)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함.
 - 1차, 2차, 3차 산업간 연계를 뜻하는 의미에서 흔히 6차 산업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제도는 효율적 운영 및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었음.
- 본 인증 제도는 2014년 제정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추진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2. 교육 참가실적, 자격 취득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에 관한 사항
3.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금, 생산품, 사업장 현황 등 사업자 일반현황
2. 매출액 또는 수출액, 고용 현황 등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활용 등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국산 농산물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포함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의 현황 및 운영 계획(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의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전 사업계획의 달성도 및 사업성과
2. 사업계획의 적정성
3.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

22.2. 지정 절차 및 기준

- 인증심사(신규, 갱신)는 수시로 실시(분기 1회 이상)하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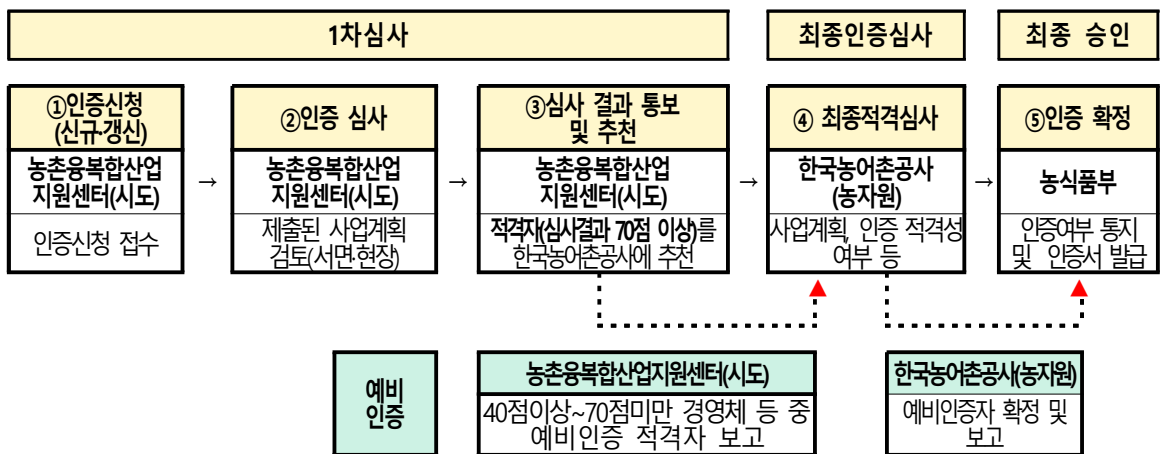


그림 22-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절차 및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인증 신청(신규, 갱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국가에서 공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자리 증빙서류, 지역농산물 증빙서류 등

표 22-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43백만원' 달성 및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43백만원(산출 근거: '19년 41,182천원, '20년 45,029)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규·갱신 대상으로 인증제도 심사위원회(3~5인)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사 실시
- 위원회는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최소 3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선정

표 22-2.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기준

신규(갱신) 기준		배점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역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 (중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기준) 	10
향후 계획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화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5
가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예비인증(2), 귀농귀촌(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각5
계	105점	

표 22-3. 농촌융복합산업 심사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가 점 (5)	신 규 (5)	예비인증자(2)	●예비인증 사업자	2
		귀농귀촌(2)	●귀농인 확인서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개 신 (5)	사회공헌(2)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척도) 실적있음(2), 실적없음(0점) ●(증빙) 기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2
		자연친화적 경영(2)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척도) 실적있음(2), 실적없음(0점) ●(증빙)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기준)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 지원센터는 1차 인증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별 추천된 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신규인증심사(사업계획 평가)는 최소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갱신심사는 농어촌자원개발원 내부 심의로 같음 가능
-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 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서 발급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 통보
 - 갱신 미 신청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사업 계획 변경)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센터로 신규 인증 신청하고,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원료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지원센터로 반드시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 인증서 재 발급
 - 지원센터는 변경인증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유효기간 내 승계 및 재발급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지원센터로 변경 신청, 지원센터는 변경사항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변경 이력(엑셀파일 형태)을 농어촌자원개발원에 공문 송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은 승계 및 재발급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대상자 공문을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변경된 인증서 발급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인증,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경우,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인증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점검 등)를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공문 송부

- 인증심사비: 신규 20만원 / 갱신 10만원

22.3. 사후 관리

- 인증사업자의 갱신, 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를 즉시 회수 조치하고 인증서 번호, 담당자, 일시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점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 ◆ (원물 사용) 주원료 사용 비율(지역산 50%, 국산 100%)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 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 ◆ (인증 표시 등 위반)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원료로 만든 제품의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 계도 기간(3개월)을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22.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1, 2, 3차 산업 간 연계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참여 경영체 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동 인증제도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일선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의 서류 작성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신청서 작성의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반의 충실성과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 본 인증제도의 취지와 직결되는 기초 여건이 충실히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외 부수적 판단 기준에 대한 항목은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또한, 한정된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교육 이수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22.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측면에서 심사기준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을 따지는 “창의성, 경쟁력”은 심사기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배점 비중을 낮추어 서류 작성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인증제도의 취지와 관련된 기초 여건이 충실히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육 참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심사 항목 중 “기초역량평가”는 ‘사업주의 최근 3년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항목은 신규 대상자뿐만 아니라 갱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갱신 사업자의 경우 신규 신청 시 해당 교육을 기이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현행 기준인 ‘최근 3년간’을 갱신 신청자에 한해 ‘최근 5년간’등으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표 22-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규제개선사항

구분	현행	제안
신규·갱신 사업자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역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역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경영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 - 단, 갱신 사업자에 한해 최근 5년간 교육 참가 실적에 대해 인정 ※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경쟁력 (배점 20점) -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경쟁력 항목 삭제 또는 배점 축소

- 해당 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여되는 ‘인증’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인증’ 대신 ‘지정’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함.

23. 식품명인

23.1. 개요 및 관련 법령

-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조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
 - 1994년 제1호 명인(조영귀, 주류, 전북 전주)을 시작으로 제92호 명인(오영숙, 가리구이, 광주광역시)까지 지정되어 있음.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를 시·도에 서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전통식품 분과위원회 평가를 거쳐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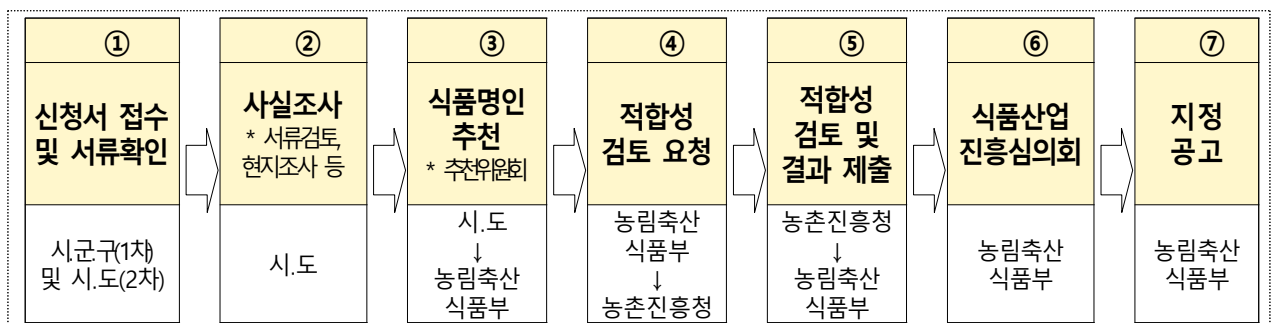


그림 23-1 식품명인 지정 절차

- 식품명인 제도는 명인으로써의 품위 유지나 지원금의 성실 사용의무 부과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규제만 증가한다는 평가가 있음.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9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대한민국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 2의2.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대한민국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식품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열람·수거”로, “해당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호의2·제1호의3 또는 제1호의6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2. 광고행위의 중단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식품의 수거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분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식품 분야: 전통식품명인
2. 전통식품 외의 식품 분야: 일반식품명인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2.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우수성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 기능의 계승·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9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제2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 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 기능의 복원·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전수시설의 신설·증설
4. 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발표회 등 개최
5. 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 2. 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 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조(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가공·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 등을 전수·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기록·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2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제7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발전가치

제8조(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성명·주소(시·군·구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조리·가공방법

제9조(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 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명인의 표지 등) ① 영 제19조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용하는 표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 제19조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명인 번호
2. 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3. 식품명인의 성명
4. 식품명인 지정기관명

제11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농촌진흥청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
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도 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적합성 검토”란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지조사”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해당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을 말한다.
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조사”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식품명인 제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와 제품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행방법)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통해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반 편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2명과 전문가 1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규모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조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절차)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실조사서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사실 여부와 영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2. 현지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지조사서 작성

제6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현지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제4조에 따른 조사반 대표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 참석하여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수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시·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의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한 조사반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 2.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
 - 3.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판품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자료 작성)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는 관련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1. 식품명인 제품 제조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시설 규모 등
- 2. 식품명인 제품의 생산·판매현황(사용원료, 원산지, 인증제품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제11조(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농촌진흥청장은 적합성 검토와 사후관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은 해당 업무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6조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3.2. 지정 절차 및 기준

- 식품명인을 신청하려면 (i) 해당 분야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ii)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거나 (iii) 식품명인으로부터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여야 함.
 - 그 동안 식품명인으로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고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 그에 따라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 해당분야 종사 경력을 단축하고 다른 경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식품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년의 경력이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명장’이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명장도 해당 분야의 경력을 15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3.3. 사후 관리

- 식품명인에 대한 표시 사항 위반 사례 적발 및 전반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를 제정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고시를 통해, 식품명인 지정 단계에서의 적합성 검토뿐만 아니라,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25조에서는 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품명인의 경우에도 지정받지 않은 품목이나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명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은 매년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포함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i)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ii) 식품명인 제품의 거래와 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와 서류에 관한 자료, (iii)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품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음.

23.4. 업계 의견수렴 내용(언론보도 포함)

- (언론보도) “‘가짜 식품명인’ 전통주 유통…사후관리 강화해야”(한국세정신문, 2020. 11. 04)
 - 전통주에 가짜 식품명인 표지를 부착해 판매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
 -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는 식품명인의 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다른 상품에도 식품명인 표지를 하여 유통함.
 - 또한, 사후관리를 맡은 농촌진흥청이 10여년 간 표시위반 여부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곳에서 제조되는 식품 및 표시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의 제거 혹은 제품을 수거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언론보도) “식품명인 제도, 혜택은 없고 규제만 늘어”(한국농어민신문, 2024. 01. 16)
 - 식품명인 업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명장 지정 시 한 차례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있으나, ‘식품명인’은 전수자 장려금 외에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지난해 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은 제품에 한해 식품명인이 만들었다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자, 식품명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해당 규제를 철회
 - 식품명인들은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처럼 농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전통식품 특성상 정부가 식품명인들의 생계 유지 및 전통식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23.5. 규제 개선 내용 제안

- 식품명인 제도는 명인으로써의 품위 유지, 지원금의 성실 사용의무 부과, 적합성 평가의 강화, 지정받은 제품 외의 상품에 식품명인 표시 금지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규제만 증가한다는 평가가 있음.
- 식품명장과 관련해 다음 내용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해당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 요건을 15년으로 완화
(제안 이유) 현재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자로 신청자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20년 연속 종사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품명인도 대한민국명장과 같이 15년 이상 종사자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3-1. 식품명인 규제개선사항

	현행	제안
1. 신청 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u>15년</u> 이상 종사한 사람
2. 식품명인 표시 사용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명인 번호 2. 식품명인 지정 분야(품명) 3. 식품명인의 성명 4. 식품명인 지정기관명	현행 유지 ²

주) 1. ‘대한민국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

2. 지정되지 않은 식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되었고, 해당 식품에만 명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됨.

제 3 장

결론 및 제언

- 2023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용 중인 23개 인증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그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함.
 - 먼저 관련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먼저 검토하고, 그 동안 정부 측에서 개선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시함.
 - 인증과 관련해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였고, 인증 발급 후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검토함.
 - 이후 해당 인증 관련 업계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지 등 언론에 해당 인증 관련 규제 내용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2개 인증(도농교류교육과정 인증, 우수종축업체 인증)은 적합성 검토에서 폐지를 권고받아 폐지가 진행 중으로, 이번 검토에서도 폐지를 그대로 권고함.
 - 21개 인증 가운데 ‘차품질 인증’은 업계의 인식도 낮고 인증에 따른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실적도 거의 없어 폐지를 권고함.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은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도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나, 사업 시행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아직 육성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함.
 - 나머지 20개 인증은 인증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실적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업계 및 농업인들의 인식도 높아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권고함.

- 도입 역사가 긴 인증의 경우, 지금까지 제도를 운용해오면서 여러 차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개선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증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마다 재평가하는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해온 인증도 있었음.

- 규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음. 첫째,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농업인 및 인증 관련 업체 등에서 불합리하다고 제기한 규제, 둘째 상황이나 기술 등이 변화하여 불필요해졌거나 변화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등
- 이러한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가 인증별로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소위 말하는 ‘대못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보임.

○ 인증 가운데 타부처와 연계된 규제도 대부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대표적인 사례가 웨어러블 로봇이나 농업용드론 관련 규제들로, 이와 관련된 인증은 범정부차원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함.

- 다만, 술품질인증처럼 타부처(국세청)와 연계되어 있는 인증의 경우에는 여전히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기계 검정이나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GPS, 단거리통신 등 첨단기술이 많이 도입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 개선 요구가 나타날 수도 있음.

○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보다 인증 취득에 따른 실효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음.

- 인증을 받는 것은 인증 취득에 따른 실익을 얻고자 함이 큰데, 실제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농업인 및 업계에서는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음.
- 특히, 인증의 신청 및 갱신 과정 등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 그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음.
- 농림축산식품부 내 해당 인증을 운용 중인 부서에서도 업계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일부 인증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었음.
- 그러나 비용 지원은 어디까지나 비용 지원일 뿐,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처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전체적으로 볼 때, 인증과 관련된 규제 개선도 개선이지만 인증 취득에 따른 실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임.
 - 이 부분과 관련해, 홍보 강화, 별도의 유통망 구축,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의 우선구매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참고문헌>

- 광주방송. 2023.11.3. “신기술·신제품 ‘효자 노릇’ 톡톡…인증기업, 매출 오르고 고용 증가”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2016.6.8. “8개 부처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 국세청. 2009.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금년부터 시행.” 국세청 보도자료(2009. 5. 4).
국토교통부, 2018. 07. 08. “농업용드론의 정부 인증·검증 간소화로 농민 곁으로 빠르게 다가간다!”
- 김태연 외. 2023. 「환경가치 중심의 친환경 인증심사·관리 방안 연구」
김태영·유도일·박세현. 2022. “친환경농산물의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 분석 연구”
농기자재신문. 2018. 06. 04. “농기계조합,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금지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제도」
- 농민신문. 2023.12.12. “친환경농산물 억울한 인증취소 막는다”
농업인신문, 2023. 03. 10. “농작업 돕는 ‘협동 로봇’, 정부 보조금 받는다”
농업인신문. 2020.09.25. “토종돼지란 무엇인가”
농축유통신문. 2022. 06.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유통 질서 확립 기대”
농축유통신문. 2024.04.13.“GAP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 완화”
돼지와사람. 2024.02.06.“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 등장 임박.....정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류인수. 2017 “한국 술 품질인증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 일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식품저널, 2023.06.27.“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주기, 기존 3년서 4년으로 변경”
영농자재신문. 2023.05.09. “친환경농산물 비의도적 농약 오염, 농가 요구시 재심사 의무화”
- 한국농기계신문. 2015. 08. 31.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한국농어민신문, 2024. 01. 16. “식품명인 제도, 혜택은 없고 규제만 늘어”
한국세정신문, 2020. 11. 04.“‘가짜 식품명인’ 전통주 유통…사후관리 강화해야”
한농어민신문, 2022. 12. 02. “발전하는 신기술…농업기계 명칭·범위 재설정해야”
Farminsight. 2023.03.31. “한우개량, 도체중·근내지방 위주의 단순식 보완해야”
안진석. 2023.12.13. “과수 무병화 인증제도 소개”, 과수무병화인증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도자료, 2023.12.18. “과수 무병화인증제. 이렇게 진행됩니다!”.